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향

지도교수 장 한 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한 광 루

한광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일

주 심 교육학박사 원 호 헌



위 원 교육학박사 장 한 기 (인)

위 원 공학박사 박 종 운



제5절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과 기준	15
1. 기능배분의 의의와 성격	15
2. 기능배분의 방식	16
3. 기능배분의 원칙	17
4. 기능배분의 기준	18
제3장 주요국가의 교육행정조직	22
제1절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22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22
2. 시·도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25
3. 시·군·자치구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28
제2절 일본의 교육행정조직	30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30
2. 도도부현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33
3. 시정촌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35
4. 시정촌의 하급행정기관	37
제3절 미국의 교육행정조직	37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37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41
3. 지역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44
4.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	49
5. 지역정부의 하급행정조직	50
제4절 캐나다의 교육행정조직	50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0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1

3. 지방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4
제5절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조직	55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5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8
3. 지방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61
제4장 한국과 주요국가와의 교육행정 비교	63
제1절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 비교	63
1.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63
2.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64
제2절 한국과 미국 교육행정조직의 비교	65
1. 한국과 미국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65
2.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66
제3절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 비교	68
1.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68
2. 한국과 캐나다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69
제4절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 비교	71
1.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71
2.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72
제5절 국가별 교육행정의 종합적 비교	74
제5장 지방교육행정조직 개선방향	77
제1절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77
1.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조직상 문제점	77

2.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	78
3.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	78
제2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안	81
1. 고등교육 및 인사업무의 지방정부 이양	81
2.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영역 조정	81
3. 지방교육행정조직 개선방안	82
제6장 결론	86
〈참고 문헌〉	88
〈부 록〉	97

〈표 차례〉

〈표 2-1〉 교육행정 계층별 기능배분 기준	21
〈표 3-1〉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64
〈표 3-2〉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비교	65
〈표 3-3〉 한국과 미국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67
〈표 3-4〉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68
〈표 3-5〉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70
〈표 3-6〉 한국과 캐나다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71
〈표 3-7〉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73
〈표 3-8〉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74
〈표 3-9〉 국가별 교육행정조직 중 주요내용 비교	76

〈그림 차례〉

[그림 3-1] 시·도 교육청 기구 재조직	84
[그림 3-2] 지역교육청의 기구 재조직	85

〈부록 차례〉

[부록 3-1]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	97
[부록 3-2] 교원인적자원부의 기구조직도	98
[부록 3-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조직도	99
[부록 3-4]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조직도	100

[부록 3-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조직도	100
[부록 3-6]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기구조직도	101
[부록 3-7] 일본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01
[부록 3-8] 일본 문부과학성의 기구조직도	102
[부록 3-9] 교토부(京都府)의 행정기구 조직도	104
[부록 3-10] 교오토부 교육청 행정기구 조직도	105
[부록 3-11] 교토시 행정기구 조직도	106
[부록 3-12] 교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행정기구 조직도	108
[부록 3-13] 미국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09
[부록 3-14] 미국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조직도	110
[부록 3-15] 캘리포니아주의 주 정부 행정기구 조직도	111
[부록 3-16]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13
[부록 3-1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행정기구 조직도	114
[부록 3-18]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 행정기구 조직도	115
[부록 3-19] 캐나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16
[부록 3-20] 앨버타주의 행정기구 조직도	117
[부록 3-21] 앨버트주 학습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18
[부록 3-22]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20
[부록 3-23] 호주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조직도	121
[부록 3-24] 빅토리아주 행정기구 조직도	122
[부록 3-25] 빅토리아주 교육훈련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124
[부록 3-26] 빅토리아주 베이사이드시의 행정기구 조직도	125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Gwang-ryool Han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sought to compare and analyze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phenomena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of Korea and major foreign nations including the US, reestablish the func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address problems surrounding the organization and consequently provide educational policy decision makers with a basis for long-term educational development.

Several reshufflings of office and staff organization caused fundamental problems surrounding Korea's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has considerably deviated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ile Korea implements local administration system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till oversee most of the major functions of local education. Likewise, municipal and provincial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ve overlapping and nonspecialized functions. Sinc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matters by both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committees and councils also overlap, they run counter to the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addition, similar jobs dispersed due to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ecrease in work efficiency. Moreover, there is no established department designed to handle the staff's welfare administration. Finall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in charge of performing frontline administration. Since the main office oversees high schools in the case of the provinci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oes not fit geographic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mparis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Korea and major nations, this research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on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focus on developing and planning policies, delegate the executive func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nd colleges to local governments, and localize the status of educational public servants.

In addition, the system for general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djusted to place all areas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arts classified as the same category under Article 9-2-5 of the local administration law under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On the other hand, all matters resolv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committees should be regarded as resolv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councils to eliminate redundancy due to overlapping deliberations and resolutions. Likewise, jobs in the lower organization of municipal and provincial superintendents of educational affairs should be converted into

local jobs. Similarly, planning departments should be installed to carry out the overall function of guiding. The function of supervising high schools should also be transferred to the local offices of education, while departments that will take charge of welfare work within the organization should be installed.

Finally, a vi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ffairs should be introduced in local education offices to perform internal jobs and most of the jobs of the education head. In turn, the head of education will be assigned to take charge of extern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러 국가의 행정현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동시에 행정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자국의 정책·행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하는 실용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나라마다 행정상황의 공간적·시간적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양한 정책·행정상황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행정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행정체제에서의 잠재적인 제약이나 기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오래 동안 당연시하여 왔던 행정의 여러 전제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과 행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날로 증대되는 현실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른 나라의 정치·행정적 제도와 역동성에 대해 더 이상 무관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교행정연구는 다른 나라에서 정책·행정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접근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어떤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비교행정은 다른 나라의 정치·행정적 잠재력과 제약성, 주요 정책·행정 수단, 정치인들과 행정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 등에 관한 전략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실체는 행정관료들이며, 여타 세력들은 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이 보편적 현상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은 분명해 진다 (박천오 외, 1999, p. 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각 국의 교육행정조직 환경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21세기에 전개될 교육행정 기능을 재정립하며, 현재의 조직편제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자에게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데 있다.

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석한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 교육청간의 사무배분은 어떠하며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둘째,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사무배분은 어떠하며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사무배분은 어떠하며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가?

넷째, 지방교육행정기관내의 사무배분은 어떠하며 재조정 할 필요성은 없는가?

다섯째, 주요 외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역할 및 사무배분은 어떠한가?

여섯째, 이상의 논점을 바탕으로 한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제3절 용어의 정의

1. “지방정부(the Local Government)”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나, 외국의 경우는 주 정부(the State Government) 바로 아래의 자치정부를 말한다.

2. “지역정부(the Regional Government)”라 함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하나, 외국의 경우는 지방정부 아래의 하급 자치단체를 말한다.

3. Office는 독립기관일 경우에는 ‘청(廳), 부서의 명칭으로는 ‘국(局)’ 또는 ‘실(室)’로 표기하며, Bureau는 ‘국(局)’으로, Service 및 Branch는 ‘부(部)’로, Division은 ‘국(局)’ 또는 ‘과(課)’로 표기하되, Division의 하부조직인 Section의 경우에도 해석상에는 문제가 있으나 ‘과(課)’로 표기한다.

제4절 연구 방법과 범위 및 제한점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사무배분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과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개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조직 및 사무배분 내용, 조직편제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중앙 및 지방의 정부와 지방교육행정조직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자료, 교육법 등 관련법령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자료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제를 제도화된 교육행정조직이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분석하

는 것이므로 각급 학교의 행정조직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을 기술하고 제시함에 있어서 비교행정의 특성상 관련 분야에 대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참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출간된 서적을 직접 참조하지 못하고 2차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그 엄밀성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상국가 또는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직접적인 자료를 참고한 경우에도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인 차이로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본 연구는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 및 분석함에 따라 본 연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연구대상인 조직 및 사무가 개편되어 최근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조직의 개념

조직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프러시아의 왕 프레더릭 大帝(Frederick the Great)가 18세기 중엽 최초의 조직이론이라고 해도 좋은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면서 내린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보병은 걷고, 기병은 말을 달리고, 대포는 끌려간다. 달리 표현하면, 조직은 서로 다른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정의된다.』. 프레드릭 대제가 내린 이 기본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대 조직에 적용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유럽 최대 광업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앙리 패올(Henri Fayol)이 개발한 제조업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Frances Hesselbein et al., 1997, 이재규·서재현 옮김, 1998, pp. 19).

조직의 개념은 각자의 조직관에 따라 다양성을 띠고 있으나 가장 보편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의해 보면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업체계」라고 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 조직은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 가능한 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이룩하고자 한다. 셋째, 분업의 원리에 따라 편성된다. 넷째, 조직은 하나의 체제로서 언제나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 다섯째, 조직이란 대체로 규모가 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비정의적 보편성에 따르고 있다 (朴東緒, 1986, p. 213).

제2절 행정조직 이론

1. 행정조직의 특성

행정조직은 기업조직 등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행정조직은 사조직(私組織)에 비해 그 존립이 영속적인 경우가 많고 독점적이며, 자기의 고유한 업무분야 또는 영역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행정관료들은 사기업(私企業)에 비해 안정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들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는다. 또한 행정조직은 사기업과 달리 법적 권한과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정당하게 강요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崔恒洵, 1999, pp. 40~41).

2. 행정조직의 원리

가. 편성기준

행정조직의 원리란 복잡하고 거대한 조직을 가장 합리적으로 편제하고 그것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다¹⁾. 행정조직의 원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조직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굴릭(Gulick)에 의하면 조직을 편성할 때에는 목적 또는 기능, 절차(과정 또는 수단), 수혜자 또는 취급물, 지역 또는 장소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조직하여야 한다고 한다 (崔恒洵, 1999, pp. 224-226; 金圭定, 1993, pp. 352-356; 姜吉奉, 1997, pp. 383-386).

(1). 목적 또는 기능에 의한 기준

행정부가 수행하는 일을 국방부·교육부와 같이 목적 또는 기능별로 나누

1) 행정조직의 원리는 部成制의 원리라고도 한다(崔恒洵, 1999, p. 224).

어 기관별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조직에서는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제일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관련된 모든 일이 한 기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의 통합적·종합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일의 중복을 피할 수 있으며, 국민이 정부기능을 이해하기 쉬우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부의 어떤 기능이든지 몇 개의 기능으로 세분화하기 어려우며, 목표 완수에만 집중하므로 최신의 기술 내지 행정 전문가의 채용이 등한시 될 우려가 있고, 조직의 장이 목표수행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경시되고 하부업무가 등한시되기 쉽다.

(2). 절차(과정 또는 수단)에 의한 기준

이는 행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수단·과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의 통계청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점으로는, 최신 기술을 본업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 업무분석이나 단가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며,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최고 관리층의 조정업무가 과중하게 되고, 수단을 중시하게 되며, 전문인으로서의 좁은 시야와 이해 때문에 통제와 조정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과정별 기준은 부처수준인 목적 기준과는 달리 행정조직의 낮은 계층에서 주로 활용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하기 적합한 조직편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수익자 또는 취급물에 의한 기준

행정서비스를 받는 수익자나 취급물자를 기준으로 하며 국가보훈처, 산림청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장점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행정업무를 능률화할 수 있으며, 실적 평가가 용이한 반면, 단점으로는 기준적용에 한계가 있고, 수익자의 압력을 받기 쉬우며, 기관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4). 지역·장소별에 의한 기준

행정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행정조직이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행정조직에서 이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 조직의 장점으로는, 지역사무의 조정·통제가 쉽고, 일정 지역내의 업무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행정이 가능하고, 사무의 능률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국가보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으며, 적정 구역을 정하기 어렵고, 행정이 지방의 유지(有志)나 압력단체의 영향을 받기 쉽다.

나. 적용과 비판

조직의 제 원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처조직의 원리도 Simon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목적, 과정, 수혜자, 지역 등과 같은 편성기준이 되는 용어의 사용이 모호하며, 부처조직의 원리 및 기준은 실증적이기보다 규범적이기 때문에 경합되는 네 가지 기준이 어떤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침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실제로는 이 네 가지 기준 이외에도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행정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네 가지 기준도 각자가 아니라 혼합되어 편성된다. 대체로 부처의 최고 계층은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편성되며, 중하위 계층은 네 가지 기준이 단독 또는 혼합되어 적용된다 (崔恒洵, 1999, pp. 225~226).

3. 행정조직의 역할

오늘날 행정국가에서는 대규모로 조직화된 행정조직들이 무수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국민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사회질서나 사회제도의 유지와 같은 전통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변동을 촉진하고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적극적 기능을 포괄한다. 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전통적 기능으로는 ① 법질서를 유지하고, ②외교활동을 전개하며, ③국방을

도모하고, ④공공사업을 행하며, ⑤과세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국가나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안전을 기하기 위한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행정조직이 수행하는 적극적 기능은 이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로위(Theodore J. Lowi)가 말한 네 가지의 정책분류, 즉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등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규제정책이란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가격통제, 교통통제, 유해음식물 단속 등의 기준을 정하거나 각종 인·허가 등을 말하며, 분배정책은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정부의 아파트 및 택지공급 등 주택정책, 하천·항만사업, 각종 연구개발사업, 기타 기업이나 농민 등 수혜집단을 위한 특정 서비스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노동자와 자본가 등 사회계층간의 부의 불평등 상태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으로, 누진세 정책이나 제반 사회보장 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및 변경이라든가 선거구의 조정 등과 같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정부기구를 적절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말한다 (崔恒洵, 1999, p. 29).

제3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집권(centralization)과 분권(decentralization)은 법률학적으로는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인데 비하여, 지방분권은 이 지휘·감독권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치적 의미로 파악할 때에는 중앙집권이란 중앙의 정치권력 내지 통치권은 강하고 지방의 자주

성은 약한 것인데 비하여, 지방분권이란 중앙의 권력은 약하고 지방의 자주성은 강함을 뜻한다. 따라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보완적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에 있어 절대적 중앙집권체제를 채택하거나 절대적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으며, 또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규환, 1999, pp. 61~62; 鄭世煜, 1998, pp. 65~66; 朴東緒, 1997, pp. 366~367).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가. 중앙집권의 장점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을 야기(惹起)하는 변수가 다양하고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 이론상 중앙집권의 장점은 반대로 지방분권의 단점이 되고 지방분권의 장점은 반대로 중앙집권의 단점이 된다 (金圭定, 1998, pp. 392~393; 鄭世煜, 1998, pp. 71~72; 이규환, 1999, pp. 64~67).

첫째, 국가적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국가가 국제정세의 변동이나 안보상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중앙집권적 체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발전 및 국민형성에 유리하다. 중앙집권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의 초창기에 필요한 자원을 기간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 경제발전이 유리하고 (John N. Hazard, 1960, p. 98), 국가형성(state-building) 및 국민형성(nation-building) 등 국가발전의 초기단계에 더욱 효과적이다 (G. A. Almond et al., 1966, pp. 34~35).

셋째,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한 국가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정도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 경제력, 문화수준, 복지수준, 산업구조, 사회간접자본 등이 많은 차이를 나타낼 경우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균형발전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넷째, 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의 광역적인 사업에 적합하며, 지역개발기능도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담당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행정의 통일성, 전문성,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에 적합하며, 인사관리나 예산관리기능을 중앙집권화하면 전문가를 중앙정부에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집중구매제도에 의할 때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앙집권은 소규모조직에 적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재정력을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부분적 이익을 초월하여 전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나. 지방분권의 장점

오늘날의 행정기능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적·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행정기능을 통합·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지방분권화와 중앙집권화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金甫炫 외 1983, pp. 49~50). 지방분권의 장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의 사회적 능률을 증진한다. 지방분권은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므로 민주주의와 능률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 민중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치를 행함으로써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popular

control)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주민참여를 유발시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주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망(wishes)을 수렴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중앙정부에 의하여 행해지는 획일적 행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넷째,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주체의식이나 사기 진작은 지방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쇄신성을 가져다준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므로 넓은 시야, 고도의 판단력과 의견을 가진 능력있는 관리자로서 훈련·양성시킬 수 있다.

다섯째,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에서는 지방정부가 현지에서 모든 행정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집행하므로 복잡한 결재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여섯째, 지역단위행정을 종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 지방분권화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행정 전체를 종합·조정할 수가 있다.

일곱째, 지역주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중화하고 완화한다. 권한이 위임되면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게 되어 그 결과에 대한 잘 잘못과 불만사항은 지방정부의 소관이 대부분이므로 불만이 지방정부를 향하게 되어 중앙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중앙집권은 한마디로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지방분권은 완전한 민주정치를 보장하고 행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이냐 지방분권은 각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양 제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일 뿐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규환, 1999, pp. 68~70).

현대의 행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권화와 분권화의 균형인데 행정을 기획·집행·평가의 과정으로 볼 때 중요한 기획이나 방향은 중앙에서 결정하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그 집행의 평가는 다시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경우에 집권화와 분권화는 보완성을 띠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白完基, 1992, pp. 234-235).

제4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1.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을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지방행정의 주체가 지역사회를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보고,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통치권력 또는 행정기능을 분배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목적의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일체의 정치적 또는 행정적 작용으로 본다. 그러나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지방행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鄭世煜, 1998, pp.21~22.).

첫째, 지방행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그 행정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불문하고 일정한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행정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행정과 위임행정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관치행

정까지도 지방행정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 예로는 아프리카·중남미 대륙과 중동의 일부 국가를 들 수 있다.

둘째, 지방행정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 수행하는 행정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행정과 위임행정만이 지방행정에 포함되며,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관치행정은 제외된다. 그 예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셋째, 지방행정을 가장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지방주민들이 그들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중에서 자치행정만을 의미하게 되며, 결국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와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된다. 그 예로는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와 같이 지방자치가 일찍이 발달한 국가에서 볼 수 있다.

2. 지방행정의 특징

지방행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국가행정 혹은 일반행정에 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규환, 1999, pp. 40~44; 鄭世煜, 1998, pp. 22~23).

첫째, 지방행정의 종합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대단히 포괄적인 것으로 지방행정의 이러한 종합성은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최종적으로 집결·용해되어 거기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특정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지방행정의 지역성이다. 국가행정이 전국을 단위로 통일적·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비해 지방행정은 국가내의 특정한 지역인 지방을 단위로 개별적·다원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임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지방행정의 일상성이다. 지방행정은 특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 활동으로서 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활동과 주민들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생활행정인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넷째, 지방행정의 자치성이다.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자치행정이라 할 때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은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제5절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방식과 기준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분배문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효율적인 실시 및 교육행정조직의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金永植, 1983, pp. 14-20). 다음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배방식과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능배분의 의의와 성격

기능배분(distribution of functions)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사무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기능배분 문제는 지방행정상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이다 (金永植, 1983, pp. 14-20).

첫째,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階層

構造)가 단층구조(單層構造)이나, 이층구조(二層構造)이나 또는 삼층구조(三層構造)이나에 따라서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이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의 배분유형에 따라 배분의 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둘째,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기능배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district)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셋째, 기능배분문제는 중앙집권(centralization) 및 지방분권(decentralization)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며 지방분권체제 하에서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배분되는 것이다.

2. 기능배분의 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과 정치구조에 따라 방식이 일정치 않으나 대체로 개별적 지정방식, 포괄적 위탁방식 그리고 절충식 등 3가지의 방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지정방식이나 포괄적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절충하여 기능배분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조화해 나가고 있다 (地方自治制實施研究委員會, 1985, p. 17; 崔昌浩 외, 1983, p. 59).

첫째, 개별적 지정방식(enumeration)은 기능을 개개의 자치단체별, 사무종류별로 행·재정능력 및 행정수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능배분의 한계가 명확하여 기능 중복이나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를 방지할 수 있으나, 개별성이 강조되어 통일성이 저해되고 기능배분작업이 매우 번잡하다. 이 방식은 영국·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둘째, 포괄적 위탁방식(universality)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구별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된 사항이나 국가 또는 다른 단체에 배타적으로 주어진 사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무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기

능배분의 융통성 및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능배분의 한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기능독점, 통제, 감독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절충식(eclecticism)은 개별적 지정방식과 포괄적 배정방식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일본·나이지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약 80여 종을 목록화하여 행정수요,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거쳐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선정하는 이른바 사무목록선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중간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기관위임사무 등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인 예시적 포괄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기능배분의 원칙

기능배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어떤 특정한 기능을 어느 단계의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는 그 기능의 종류, 성질, 내용에 따라 다르다. 이론상 기능배분의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는데 일본의 임시행정조사회가 2년 이상 걸쳐서 일본의 사무배분의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1964년에 보고한 「사무배분에 관한 개혁의견」에 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金永植, 1983, pp. 17-18)²⁾.

첫째, 현지성의 원칙이다. 지방행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와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생활과 밀착된 사무는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이를 주민으로부터 가까운 단체나 기관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주민참여의 원칙 또는 지방자치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기능배분의 원칙으로서 일본의 행정사무배분에 관한 샤아프(shaup)사절단의 보고서(1973)에서는 ①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② 능률의 원칙, ③ 지방자치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金甫炫과 金庸來는 ① 기초적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②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③ 행정능률의 원칙, ④ 행정수요 특수성 적합의 원칙, ⑤ 계획-집행·분업의 원칙, ⑥ 협력의 원칙, ⑦ 이해관계범위의 원칙, ⑧ 경비부담능력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둘째, 종합성의 원칙이다. 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를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도 보통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를 지역 종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셋째, 경제성의 원칙이다. 행정의 능률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를 각 단체의 규모, 행·재정능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체나 단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 원칙을 행정의 능률적 집행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본원칙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예시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한 처리토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아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양되는 사무와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한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하고, 다섯째, 주민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권한 내지 사무는 시·군·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여섯째, 시·군·자치구가 처리하는 사무중 시·군·자치구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초월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사무 등 그 업무의 성격상 시·도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인 사무는 시·도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기능배분의 기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기준이란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孫在植, 1971, pp. 120~121; 鄭世煜, 1984, pp.

187~188; 金永植, 1983, pp. 18-20; 金鍾喆외 2인, 1982, p. 32).

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어서의 고려할 사항은, 첫째, 국가행정사무의 종합성·통일성 유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문제,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국가-시·도-군간의 삼원적 배분),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능력, 다섯째, 국세와 지방세간의 자원배분과 보조금제도,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사무배분 기준을 보면, 국가에서 만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는 첫째,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둘째,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이나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셋째,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이다.

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그 예시된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둘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셋째,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넷째,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다섯째, 교육·체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여섯째,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및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로 크게 2 가지로 구별하여 종류별로 배분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배분기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배분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둘째,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셋째,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넷째,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다섯째,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여섯째,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들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직접적인 시행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아교육시행 계획의 수립, 공·사립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가,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경영 및 지휘·감독은 기초자치단체가 맡는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 1).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등학교 이하 공립 각급학교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제1조 및 제2조).

(2).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배분기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배분사무는 앞에서 열거한 광역 자치단체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만을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

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는 첫째, 자치단체의 사무 중 성질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둘째, 시·군의 조직, 재정,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셋째, 지역주민에 관한 직접적 봉사업무, 넷째, 기능수행결과가 관할 시·군에만 미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기능배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사이의 기능 배분에 있어서도 위의 일반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부총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순서는 기획기능, 조정기능, 조직기능, 평가기능 및 집행기능 순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의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면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고, 시·군·자치구의 기초단위까지 지방교육자치체가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행정 계층별 기능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표 2-1> 과 같다 (윤정일, 2000년 12월, pp. 168-170).

<표 2-1> 교육행정 계층별 기능배분 기준

교육행정 계층	기능 배분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획 및 정책개발 ◦ 인적자원개발·관리업무 기획·조정 ◦ 교육의 질적수준 평가 ◦ 시·도 교육청간 형평유지 ◦ 시·도교육청이 관할할 수 없는 국가수준의 업무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정책의 구체화 및 지역교육계획 수립 ◦ 지방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업무 기획·조정 ◦ 지역교육청간 형평유지 ◦ 지역교육청의 능력과 관할권을 초과하는 업무
지역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정책의 구체화 및 지역교육계획 수립 ◦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기준의 통일·조정을 요하는 업무 ◦ 단위학교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 ◦ 단위학교 지도·감독

자료: 윤정일, 2000년 12월,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기능 분담, 教育行政學研究, 제18권 제4호, 통권 제41호, 서울: 韓國教育行政學會, pp. 168-170

제3장 주요국가의 교육행정조직

제1절 한국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으로 조직하고, 장관 또는 청장 밑에 보조기관으로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두고(정부조직법 제2조), 보좌기관으로는 주로 차관보, 담당관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조기관은 계선기관(line), 보좌기관은 참모기관(staff)을 의미한다.

부처조직은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직구조로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집행한다. 그 명칭은 우리나라는 '부(部)',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는 'department', 일본은 '성(省)', 영국은 'department' 또는 'ministry', 프랑스는 'ministere', 독일은 'bundesministerium'이라고 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하다 (조석준, 1994, pp. 153~166; 최향순, 1999, pp. 261~264).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중앙정부의 행정기구조직은 [부록 3-1]과 같다.

나.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하부조직으로는 차관보, 기획관리실, 총무과·학교정책실·인적자원 정책국·평생직업 교육국·대학지원국 및 교육자치 지원국을 두며,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국제교육정보화기

획관을 둔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4조).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다 (www.moe.go.kr/). 교육인적자원부의기구 조직표는 [부록 3-2]와 같다.

(1). 공보관

공보관은 공보업무의 계획 및 조정, 교육정책홍보, 언론 보도내용 정리 및 기사분석, 교육마당21 및 교육소식지 발간 등을 담당한다.

(2). 감사관

감사관의 감사, 공직감찰,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교육정보화 정책수립 및 지원, 교육방송, 행정전산화, 국제교육협력, 재외동포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4). 총무과

총무과는 보안 및 관인관리에 대한 사항과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문서관리와 물품구매, 국유재산관리,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비상계획업무와 청사의 관리 및 방호, 도서실 및 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은 주요업무계획 등의 지침수립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조직 및 정원관리, 제도개선, 규제완화, 소송 및 법령질의와 각급 학교 시설 및 학교용지, 여성교육과 비상사태 대비계획의 수립업무를 담당한다.

(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실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정책 수립, 교육제도 연구, 교과 및 생활지도, 통일교육 기본정책 수립,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편찬 및 검인정 교과서와 교과용도서 발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와 자격, 양성, 임용, 징계, 연수 및 보수,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수립과 교원복지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인적자원 정책국

인적자원 정책국은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 정책과제 개발 전문인력 육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 산학협동과 과학교육, 영재교육 및 학생 건전문화 형성과 교육발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평생직업 교육국

평생직업 교육국은 평생교육 종합정책 수립 및 진흥정책 개발, 관련단체와 시설육성 및 지원, 방송통신교육, 학원의 설립 및 운영, 산업교육 및 자격제도,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대학지원국

대학지원국은 대학 및 대학원 교육 기본정책수립,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인사제도, 교수자격, 대학생 복지 및 장학금지원,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 교육자치지원국

교육자치지원국은 지방교육자치제도, 유아교육진흥,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진흥 기본정책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도, 고교평준화 정책·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예산 및 결산, 학교급식,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시·도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시·도의 행정조직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자치체인 시, 군, 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여러 기초적 자치구역을 포괄하는 넓은 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광역자치단체(wide-area unit of local government)라고 하며, 후자는 기초적 자치구역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primary unit of local government)라고 한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집행기관인 일반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과 교육·학예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이 있다. 이외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규환, 1999, pp. 245~249). 부산광역시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담당하고 있는 교육,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재 보존, 종교 육성 및 향교관리, 도서관, 박물관 및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문화공간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아동복지 및 보육행정, 어린이놀이터 관리, 시청어린이집 운영, 청소년에 대한 보호, 국제교류 및 수련활동 지원, 중·고교 중퇴 청소년 지원 및 비정규학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 조직은 [부록 3-3]과 같다.

나. 시·도의 교육행정조직

우리나라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나(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0조).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구조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치체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지만 완전한 의결기관이 아닌 일부 의결기관에 속한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에만 설치하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설치하지 않고,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독립채 집행기관이지만,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기구조직표는 [부록 3-4]와 같으며,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조).

(1).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공보업무를 계획하고 교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홍보하며 여론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자체 기관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개혁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실시한다. 그리고 감찰 및 공직기강업무, 비위와 진정 및 청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하

고, 공무원 범죄발생,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교육, 입학 및 전학업무, 교원의 채용, 인사, 징계 및 소청과 고충처리,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 입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약물 오·남용 및 여성정책, 교원단체 교섭, 과학영재교육, 산학협동 및 현장실습, 졸업생 취업지도, 직업교육과 국가기술자격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평생교육, 보건 및 체육교육,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청소년단체의 지도감독 및 국제교류, 학교급식, 학생의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수련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보원, 체육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도 감독한다.

(4).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은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관련 업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징계·복무 및 국외여행, 연금 및 의료보험, 후생복지와 직잡협의회 관련 업무, 민원봉사실 운영을 담당하며, 주요업무계획, 인적자원개발 정책, 조직 및 정원관리, 행정제도 개선, 각종 위원회 관리, 교육통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각급학교 설립·폐지와 수용계획, 통학구역, 중학구 및 학군설정,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사립학교법인 지도감독,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법령해석,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수행하며 교육관련 법령상담실을 운영한다.

또한 예산 및 물품구매·시설공사의 계약, 학교회계 지도, 입학금 및 수업료의 조정,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재산의 취득·처분, 방재업무, 외자관리, 시설투자,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의 부지조성, 공사설계·검사 및 지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건축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시·군·자치구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시·군·자치구의 행정조직

지방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있으며 기초적인 자치구역만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한다. 지역정부의 하부조직으로는 시에는 구³⁾와 동 또는 동만을, 군에는 읍을, 자치구에는 동을 둔다. 이들 하급 행정기관장인 구청장과 읍·면·동장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기초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교육,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업무는 총무국 문화공보과에서 지역문화 예술, 종교 및 향교, 유·무형 문화재 보호관리, 도서관 지도감독, 청소년 지도 및 수련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 보육시설 설치인가 및 지도감독, 소년·소년가장 지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행정기구 조직은 [부록 3-5]와 같다.

나. 시·군·자치구의 교육행정조직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을 두되,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하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제37조), 하부조직으로는 학무국과 관리국을 둔다. 부산광역시 남부교

3)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두며 자치구가 아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육청의 기구조직도는 [부록 3-6]과 같고, 부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7조).

(1). 학무국

학무국은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성적관리 및 생활지도, 진로·상담지도, 교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자격관리와 징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교과서 공급업무를 담당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도, 교원자녀 보육시설운영 지도와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교육행정전산화, 장학생 선발, 학생 전·입학 업무와 고입업무, 평생교육 및 여성정책, 학원 및 과외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중학교과정의 설립, 폐지 및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을 지도감독, 체육교육 및 학교급식과 보건,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 운동장 개방, 학교환경위생, 결식학생 중식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조).

(2). 관리국

관리국은 기획 및 평가, 소송,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교육훈련, 상훈 및 징계, 후생복지 및 연금, 민원봉사실과 행정자료실 운영, 간행물 발간 등록,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지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설립 및 폐지, 수용계획 수립, 의무취학 및 학구제 운영, 감사, 교육통계,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사립학교 및 유지경영 법인의 설립과 해산, 정관변경 및 임원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예산,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 재산취득 및 처분, 학교재해복구 공제회 및 방재업무, 보수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시설투자, 공립 초·중학교의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 설계 및 검사, 사립학교 시설관리지도, 위험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6조).

제2절 일본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일본의 자치단체 계층구조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등 2층제로 되어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법적 지위와 구조를 가지며, 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도 명확히 되어 있는 편이다. 도도부현은 기본적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이나 도(都)는 특별구 제도나 도지사(都知事)의 보조부국(補助部局) 및 지청의 설치 등에서 일반 도부현(道府縣)과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⁴⁾ (이규환, 1999, pp. 299~3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9월, p. 4; 박천오외 8인, pp. 186~188). 중앙정부차원에서 교육은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조직 기구조직표는 [부록 3-7]과 같다.

나.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문부과학성과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관계는 지휘·명령의 관계가 아닌 지도·조언의 관계이며, 시정촌(市町村)에 대하여도 직접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육·과학기술·학술, 문화 및 스포츠의 진흥과 보급에 관한 국가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www.monbu.go.jp/aramashi/2000jpn/02/02-5.htm). 문부과학성의 조직은 [부록 3-8]과 같으며, 분장사무는

4) 동경도의 특별구는 특별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실상 종합행정기능을 다루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가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구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이규환, 1999, p. 300).

아래와 같다.

(1). 대신관방

인사, 총무, 회계 등의 일반 사무와 성 전체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 및 정책 평가, 소관 사무에 관한 홍보 및 정보처리, 국제 관계 사무의 총괄, 국제 원조 협력, 문교 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생애학습 정책국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본정책의 기획·입안과 국내외의 교육 사정 조사, 정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교육의 진흥, 가정교육의 지원과 남녀 공동참화(男女共同參畵) 등에 관한 생애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정비한다. 또한 방송대학의 정비·충실, 전수학교·각종학교 교육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초등중등 교육국

초·중등 교육의 진흥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맹·농·양호학교,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기준설정, 학생지도, 진로지도와 해외 자녀 교육, 교과서의 검정 및 무상급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지방 교육제도, 교육 공무원에 관한 제반제도, 학급편성, 교직원 정수, 교직원의 급여, 공립학교 시설정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고등교육국

고등교육의 진흥을 위해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책정, 대학·단기 대학·고등 전문학교의 설립인가, 대학의 입학자 선발과 학위수여, 학생의 후생보도(厚生補導)·장학, 유학생 교류의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학교법인 경영의 지도·조언,

사학조성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과학기술·학술 정책국

과학기술·학술의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입안과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평가,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의 이해 증진, 국제연구 교류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함께 연구용 원자로나 방사성 동위 원소 등의 안전 규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연구 진흥국

학술기관의 정비, 학술연구 조성을 위한 학술진흥 시책과 발명장려, 성과(成果)활용이나 산학관(産學官) 제휴의 촉진, 정보 기반 등의 연구환경 정비 등, 분야 횡단적(分野 橫斷的)인 연구진흥 시책을 추진하며, 정보과학 기술, 생명과학, 양자 과학 등의 기초·기반 연구개발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연구 개발국

방재, 지진·화산, 해양·지구에 관한 연구개발과 남극 관측의 추진, 국제 우주스테이션 계획을 위한 우주의 연구·개발·이용, 핵융합 연구나 핵연료 사이클 등 원자력 기술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의 진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원자력 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스포츠 청소년국

학교 체육의 충실, 학교 보건·학교 안전의 향상, 학교급식의 보급·향상의 충실과 생애 스포츠의 추진,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지원이나 경기 수준의 향상, 프로스포츠의 진흥 등 각종 스포츠 진흥 시책, 청소년 교육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 등, 국민심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한다.

(9). 통괄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유네스코 국내 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유네스코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과의 문화협정 및 과학기술 협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0). 문화청

예술가 등의 양성과 예술창조 활동의 조성, 문화시설의 정비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 지원, 아이누 문화의 진흥과 국제문화교류의 추진, 국보 및 중요문화재, 사적 및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지정과 무형문화재의 보존, 저작권 제도의 정비 및 보급, 국어의 개선, 보급과 일본어 교육 등 문화건국을 목표로 하는 시책추진과 종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도도부현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도도부현의 행정조직

교토부에서의 교육은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청에서도 4개 실·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무부 문교과에서 교토부립 대학, 사립학교, 사립전수학교, 사립 각종학교 학교법인 및 종교법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환경부 문화학술연구도시 추진실에서 문화학술 연구 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포츠 평생학습실에서 체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부민 노동부(府民 勞動部) 능력개발과에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고등기술 전문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교토부(京都府)의 행정조직은 [부록 3-9]와 같다.

나. 도도부현의 교육행정조직

도도부현의 교육은 지사(知事)가 도도부현립 대학을 관장하고 교육위원회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하며, 시정촌은 시정촌장이 시정촌립 대학을 관장하고 교육위원회는 시정촌립 대학을 제외한 관내의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한다. 따라서 도도부현 지사는 시정촌의 촌장 및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도 시정촌 교육위원회와 시정촌장의 교육사무에 대하여도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다 (www.monbu.go.jp/aramashi/2000jpn/02/02-5.htm). 교육위원은 도도부현과 시에서는 5명, 정촌에서는 3명이며,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9월, pp. 16~17; www.houko.com/00/01/S22/067A.HTM#s2).

쿄토부 교육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어 있고, 합의제 집행기관이며 5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교육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사무국에 의해 집행된다. 교토부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을 교토부(京都府) 교육청이라고 하며, 2부 1실 9과로 구성되어 있고, 산하기관으로서 부 관내에 7개의 교육국 및 매장문화재 사무소를 두고 있다 (www.kyoto-be.ne.jp/kouhou/org.htm). 교토부 교육청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0]과 같으며, 교육청의 행정기구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부

관리부는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인사, 복무 및 예산 등 위원회의 창구에 관한 사무와 부립학교 시설정비, 시정촌립 교육시설의 국고 보조금 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교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무와 교원채용시험 및 강사등록, 공립학교 공제조합 교토지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지도부

지도부는 인권교육, 공립 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육, 교직원 연수, 교육상담, 중졸학력인정 시험, 교원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부립 고등학교 교육, 입시사무, 체육, 학교보건, 교직원 및 학생 건강관리, 문화재의 보호·보존·활용, 사회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부립 도서관, 소년자연의 집 및 부인 교육회관 운영을 맡고 있다.

3. 시정촌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시정촌의 행정조직

시정촌의 하나인 교토시의 교육은 행정위원회인 교토시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교토시의 총무국 총무부 총무과에서 시립 예술대학 운영하고 이재국 재무부 조도과(調度課)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itiran/r_taikei_08.html), 교토시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1]과 같다.

나. 시정촌의 교육행정조직

교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의 사무는 교토시 교육위원회 통칙 제17조의 2에 의해 훈령인 교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사무분장세칙으로 정하고 있다.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가진다. 그 중에서 취학연령아동 및 학생의 취학에 관한 사항은 일선행정기관인 구장(區長)에게 위임하고, 공직선거에 의한 학교시설 이용, 학교시설의 건축공사, 시민의 문화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체육에 관한 사항은 교토시의 각 국과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www.city.kyoto.jp/kyoiku/index.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944041305011.html). 교토시 교육

위원회 사무국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2]와 같으며, 부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총무부는 비서, 상벌 및 복무, 기부금, 관인보관, 복리후생 및 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홍보 및 여론수렴, 정책기획 및 조정,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직원단체 및 노동조합, 노무관리 및 학교법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교육 재무행정의 조사·홍보, 학사, 교육통계, 방재, 학교안전, 학교교구 정비, 조례 및 규칙심사와 법규해석, 소송, 학교의 설립 및 폐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구역, 교육정보화, 학교회계, 학생 사고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또한 교직원의 인사관리와 채용, 인사 및 급여와 관련되는 조사기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지도부

지도부는 인권교육 기획과 추진, 학습센터 관리 운영, 중학교 2부 학급운영, 학교교육 활동지도, 교육과정과 교과내용, 교과용 도서채택 등을 담당하며, 학교와 가정 및 지역 제단체(諸團體) 상호간의 제휴를 촉진한다. 그리고 장애아동 및 학생과 관련되는 교육의 기획·지도·조성을 담당하고, 정보교육과 관련되는 기획, 조사연구 및 지도, 교직원연구, 학생실습, 교육통계, 아동·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취학지원, 수업료감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체육 건강 교육실

체육건강 교육실은 학교의 질병예방 대책, 취학시의 건강진단, 유아, 아동,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학교급식 및 치아질병 예방, 학생체육대회 계획 및 시행, 스포츠 소년단 등 체육단체 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평생 학습부

평생학습부는 평생학습계획 및 진흥, 사회교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가정 교육학급 및 여성학급 등의 개최 및 지도, 인권사상보급, 여성단체 및 청년단체육성과 지도자 양성, 교양 및 기술향상, 문맹퇴치 학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947041305011.html).

4. 시정촌의 하급행정기관

쿄토시의 하급행정기관으로는 11개의 구(區)를 설치하고 구에는 기관장인 구장(區長)을 둔다. 우리나라의 시·구·군(市區郡)중 시의 행정구칭에 속한다.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구와는 다르며 우리나라의 구칭에 해당하는 역소(役所)가 있다. 교육행정은 교토시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므로 구 행정조직차원에서는 담당역할이 없다(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105041305011.html).

제3절 미국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미국의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전쟁, 통화관리, 관세, 연방법원, 대외교역 및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며, 교육은 주 정부의 관할이다 (金光雄의 2인, 1998, p. 186; 金光雄 외 2인, 2000, p. 131; 具永錄, 1975, p. 64). 미 연방제도는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 정부(state

government) 및 지역정부(local government)로 대별되며, 지역정부의 종류에는 카운티(county), 시(city) 또는 보로우(borough), 타운(town, township), 교육구(school district), 기타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李正寬, 1999, pp. 16~17). 미국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3]과 같다.

나.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미국에는 국가차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조직법이나 관련 법률이 없다. 국가의 법률로는 제도설치, 자격 및 등급인정, 공약승인, 교육과정 또는 학문적인 필수조건 규정, 기관운영이나 학생신분 및 기능과 같은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오직 미국의 해외시설에 배치된 직원자녀에게 초등 및 중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학교, 기타 교육훈련기관과 공립 학교와 같이 연방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훈련 서비스의 경우에 한정된다(www.ed.gov/NLE/USNEI/us/fedrole.html). 미국 연방정부 교육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4]와 같으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실

장관실은 교육부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장관에게 중요한 자문을 한다. 교육부의 프로그램 및 운용의 능력, 효과성을 촉진하고, 회계감사, 조사, 교육부에 관한 출판물 공개, 방송보도 자료 제공, 브리핑, 기록사진 보관, 장관의 연설원고 작성 등을 담당한다(www.ed.gov/offices/OGC/org.html; www.ed.gov/offices/OIG/).

(2). 부장관실(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부장관실은 성과기준을 정하고 인사·예산·계약·설비 등 내부 행정문제,

부모 및 학생권리에 관한 법률 집행, 청문회 및 이의신청, 노사관리, 제도개선, 교육훈련, 기구설치 및 재산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투자 및 관리, 정보시스템 자동화, 정부 부서간 인터넷 통신전략, 재정개선과 회계감사 등을 관리한다 (www.ed.gov/gen_ed_org/emt.html; www.ed.gov/offices/OM/; www.ed.gov/offices/OCIO/; www.ed.gov/offices/OCFO/orgtxtnw.html).

(3).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차관은 정책개발, 예산집행, 기획 및 평가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교육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정책과 입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www.ed.gov/offices/OUS/about.html).

(4). 학생재정보조국(Office of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주요 연방학생원조 프로그램,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타 연방, 주 및 지방에 대한 원천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 대부금 상환 관리 및 고개의 의견수렴을 담당하고 있다 (www.ed.gov/offices/OSFAP/).

(5). 초·중등 교육국(Offic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초·중등 교육국은 학문적인 우수성 증진, 미국의 어린이와 가족 모두를 위해 교육의 평등한 기회제공, 교수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력 향상, 기술적인 원조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www.ed.gov/offices/OESE/aboutus.html).

(6). 교육연구·개선국(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 Improvement)

교육연구 개선국은 교육연구 및 통계에 대한 국가의 지도력을 제공하며, 다음에 의해 미국교육에서 우수성과 공평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www.ed.gov/offices/OERI/mission.html).

(7). 직업·성인 교육국(Office of Vocational & Adult Education)

직업·성인 교육국은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노동연계 교육, 고등학교 개혁, 사회대학, 교정교육, 소수민족대학 및 대학교, 지역사회기술센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권한부여 지역 및 기업 공동체와 교사발전 업무를 담당한다 (www.ed.gov/offices/OVAE/aboutus.html).

(8). 중등과정 후 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중등과정 후 교육국은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학생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 장학금 지급, 교육세 공제 등 다른 고등교육으로 진학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중등과정 후 교육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등과정 후 교육기관 및 중등과정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www.ed.gov/offices/OPE/News/Welcome/overview.html).

(9). 2개 언어교육·소수민족어국(Office of Bilingual Education and Minority Languages Affairs)

이 국은 국가의 영어학습인구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촉진하는데 국가의 지도력을 제공한다. 국의 임무는 언어 소수민족의 의사일정을 돕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에 학교개혁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학문 기준, 학교책임 향상, 전문성 개발강조, 가족의 읽고 쓰는 능력촉진, 조기 독서 권장, 학부모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구축에 관한 강조를 포함한다 (www.ed.gov/offices/OBEMLA/).

(10). 특수교육·재활국(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국은 부시 대통령의 ‘두 처진 아이를 없게 하고 새로운 자유의 시작(Leave No Child Behind agenda and the New Freedom Initiative)’에 의거, 국은 특수교육, 복지 및 연구의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부모 및 개인, 학구 및 주 정부에 능력 없는 유아, 아동 및 성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개인들이 학교, 고용, 삶에서 뒤쳐지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www.ed.gov/offices/OSERS/).

(11). 시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증, 시민의 불평 해결, 대리 소송과 기술적인 원조제공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차별에 직면한 학생인구와 시민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지지자 및 단체를 만족시킨다. 대부분의 시민권국 활동은 국가 전체에 걸쳐있는 12개의 사무실에 의해 수행되며, 이들 사무실은 미국 학생에 대한 예방(preventing), 확인(identifying), 종결(ending) 및 차별구제(remedying discrimination)의 핵심사업을 수행하는 4개 과로 조직되어 있다 (www.ed.gov/offices/OCR/aboutocr.html).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주정부의 행정조직

캘리포니아주의 교육은 주 정부의 행정조직 내에서 교육감 밑의 교육부, 주 장관 겸 소비자 보호국 밑의 총무부 및 교사퇴직제도부, 그리고 교육장관실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장관실은 교육문제에 관하여 주지사에게 정책을 추천하고 조언하며, 대학 지원자 및 지도자 프로그램, 기술교육 지원 프로그

램, 캘리포니아 독서 및 주지사 독서상 프로그램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www.ose.ca.gov).

주 장관 및 소비자 보호국 밑의 총무부 소속 공립학교 건축실은 주 배치위원회(the State Allocation Board)로서 학교시설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학구의 자금지원 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하며, 주 배치위원회의 재평가 및 인가추천 및 자금지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교사퇴직제도부는 교사퇴직위원회를 운영한다 (www.opsc.dgs.ca.gov/default.asp?mp=../AboutOpsc/main.asp). 캘리포니아 주의 주정부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5]와 같다.

나. 주 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미국에서의 교육은 주 정부 및 지역정부의 책임이다. 모든 종류의 공사립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 및 지역공동체는 학교와 대학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등록 및 졸업에 대한 필요조건을 정한다 (www.ed.gov/offices/OUS/fedrole.html).

주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주 교육위원(state board of education), 교육감(commissioner 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그리고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이다. 주 교육위원회는 주 교육부의 각종 교육정책을 최종 승인하며, 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이 주지사에 의해 직접 임명되고 있지만 주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교육감 겸 교육부장관을 정점으로 하여 정책·프로그램담당 수석 부교육감과 책임·행정담당 수석 부교육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cde.ca.gov/cdeorg.html).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6]과 같으며, 분장사무는 아래와 같다.

(1). 교육감(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and Director

of Education)

주 교육감은 주지사(New Jersey주 등) 또는 주 교육위원회(New York주 등)에 의해 임명되거나 혹은 일반선거로 선출되기도(California, Winsconsin, Washington 등)하나, 캘리포니아 주 교육감(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으며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주(the State) 공무원이다. 주 교육감은 주 교육부장관 및 행정 공무원이고, 주 교육부의 최고 집행책임자이며, 주 교육부는 주 교육위원회와 주 교육감의 행정보조기관이다(Joel Spring, 1985, pp. 166~168). 또한 주 교육감은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s),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평의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며, 미국 학교개선법(Improving America's School Act)같은 교육문제에 관한 자문으로서 이사회, 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일원이다.

(2).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표준, 교육과정 교수자료 및 평가영역에서 K-12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K-8 학년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채택하며, 주 교육법전 폐지에 대한 지역교육기관의 요구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 교육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임기의 학생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www.cde.ca.gov/board/vmgoal.html; www.cde.ca.gov/board/).

(3). 정책·프로그램 담당 수석부교육감(Chief Deputy Superintendent for Policy and Programs)

정책·프로그램 담당 수석부교육감은 행사 및 발표 등의 뉴스 서비스를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질 높은 건강 및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며, 학생의 학력향상과 학구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그리고 성인교육, 자립연구 및 기회 프로그램, 계속교육, 지역사회의 날

학교, 5) 입양청소년 서비스, 탈락방지 프로그램, 학교안전 및 폭력방지, 상담, 특수교육, 주 정부의 특수학교와 진단센터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www.cde.ca.gov/news/; www.cde.ca.gov/cyfsbranch/; www.cde.ca.gov/cilbranch/; www.cde.ca.gov/spbranch/).

(4). 책임 · 행정담당 수석 부교육감(Chief Deputy Superintendent for Accountability and Administration)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자문하며, 매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력표준에 대한 평가와 학생성적을 관리하고, 캘리포니아 주 시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수행한다.

그리고 학교정보 및 인구통계, 기초교육자료, 시험 및 구매공고, 직무명세 분류, 주 정부 인사위원회 및 교육경력 등을 관리하고, 카운티 교육청과 학구에 자금배정 및 재정정보 수집, 공립학교 행정에 대한 조언, 카운티 교육청 및 학구의 재정책임 및 지불능력을 보장한다.

또한 학구통합 및 테리토리(territory)의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입법 사무를 담당하며 학습개선을 위한 학구관리 체제를 개발하며, 학생성적 감독체제를 개선하고, 시민 불평에 대한 대응체제를 관리한다. 또한 통합된 지원물자를 관리하고, 학교 사이트에서 학습에 토대로 한 학교계획 개발을 촉진한다 (www.cde.ca.gov/ana.htm; www.cde.ca.gov/labbranch/l.html; www.cde.ca.gov/labbranch/Audits.html; www.cde.ca.gov/ope/; www.cde.ca.gov/statetests/; www.cde.ca.gov/cdeorg.html; www.cde.ca.gov/ccpdiv/).

3. 지역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5) 지역사회의 날 학교(DISTRICT COMMUNITY DAY SCHOOLS).

1998년 지역학구 위원회에서 퇴학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적인 배치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학구 또는 카운티 교육사무소에 의해 운영되며 학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www.cde.ca.gov/spbranch/essdiv/dcdds_index.html).

가. 지역정부의 행정조직

지역정부는 카운티 또는 패리쉬(county or parish), 도시형 자치정부(municipality), 타운 또는 타운십(town or township), 교육구(school district) 및 특별구(special district)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⁶⁾. 이들은 기능 자체가 서로 다르고 상호간에 계층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구역이 각각 별도로 설정되나, 주 정부의 일선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카운티와 타운만을 보면 카운티 안에 여러 개의 타운이 존재한다 (李正寬, 1999, pp. 46~47). 캘리포니아주 27개 카운티 중의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7]과 같다 (www.co.la.ca.us/overview.htm).

나. 지역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카운티 교육청(LACOE: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Education)이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카운티 헌장에 의한 필수기구로 카운티 행정조직 내에 임명직인 카운티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교육감의 업무를 집행하는 교육실(Office of Education)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부교육감(Deputy Superintendent)과 사업부, 현장학교부, 통신부, 교육기획부, 교육부, 교육통신기술부, 인적자원부, 내부회계감사·분석부, 고용부(LACOE Employment), 지도력팀, 협력단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학구 및 인사위원회가 있다 (<http://ordlink.com/codes/lacounty/index.htm>; www.lacoe.edu/lacoeweb/index.cfm).

(1). 사업부(Business Service)

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시 자치단체(Municipality), 카운티, 타운, 타운십 등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연구자료집, 97-5, 제61권, 1997. 9월, 「美國 大都市의 지방자치」,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3.).

사업부는 학구 및 공립학교, 지역사회 대학의 입찰, 계약업무 및 회계감사와 연방 및 주 정부의 자금이 제공된 프로젝트, 부동산의 임대, 정보체제, 공공사업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카운티 교육청, 학구 및 지역사회 대학구에 대한 대형 고속컴퓨터 서버, 회계 및 인적자원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재정관리, 인적자원체제 관리, 급료지불대장 및 인사, 교사 신용보증, 퇴직, 회계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www.lacoe.edu/lacoeweb/orgs/100/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373/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479/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102/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06/index.cfm?showMore=yes).

(2). 헌장학교부(Charter Schools)

헌장학교부는 학력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학습기회를 주고, 교수방법 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07/index.cfm).

(3). 통신부(the Communications Department)

통신부는 교육자, 의사결정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지도자 및 국민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교육청의 공공정보실이다. 정부 창구와 지역사회간의 협력관계를 관리하고, 지방학구의 통신 필요성을 지원하며,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촉진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08/index.cfm).

(4). 교육기획부(Educational Programs)

LACOE는 학교에서 탈락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무능력 학생, 청소년 범죄자와 그 외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카운티 내의 예술고등학교와 국제공예 고등학교를 운영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17/index.cfm?showMore=yes).

(5). 교육부(Educational Service)

카운티 교육청은 학교, 학구, 교사, 행정가, 학생 및 학부모 등 많은 다른 지역공동체에 지역화 되고 전문화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개혁 프로그램,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및 학교지도력 프로그램, 경력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18/index.cfm).

(6). 교육통신기술부(Educational Telecommunications & Technology)

교육통신기술부는 국가의 가장 큰 지역교육기관의 국으로써, 주민에게 전문적인 발전 프로그램, 웹, 멀티미디어, 방송, 원격 화상회의 및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86/index.cfm?showMore=yes).

(7). 인적 자원부(Human Resource Service)

인적자원부는 내부 및 외부 고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촉진하고, 직원의 팀워크를 촉진하며, 작업장에서 품질, 공정 및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다양성 개발을 촉진한다. 그리고 인사, 노사관계와 고용지원을 통하여 충돌을 해소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체제개선에 투자하고, 변화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카운티 교육청(LACOE)의 역량을 구축하는 지속적인 조직개발을 촉진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15/index.cfm?showMore=yes).

(8). 내부회계감사 및 분석부(Internal audit and Analysis)

카운티 교육청의 회계감사와 자산 및 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www.lacoe.edu/lacoeweb/orgs/111/index.cfm).

(9). 고용부(LACOE Employment)

교사채용센터는 교사경력에 대한 정보, 채용 및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사위원회는 직위분류제에 의해 모집하고, 실적에 바탕을 둔 고용인의 선택

및 유지를 촉진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369/index.cfm).

(10). 지도력 팀(LACOE Leadership Team)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은 엄밀한 학문적 표준 및 평가에 의해 학생학력을 최대화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둔다. 카운티 교육감(the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교육위원회 및 집행내각(the Executive Cabinet)으로 구성된 카운티 교육청 지도자 팀은 카운티 전체에 걸쳐 모든 학년단계에 학생학력을 향상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www.lacoe.edu/lacoeweb/orgs/123/index.cfm).

(11). 협력단체(LACOE Partners)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여러 협력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스앤젤레스 학구위원회(카운티 위원회)는 학구 전환, 학구신설 또는 통합계획을 포함하여 학구재조직 계획을 재검토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그리고 학교 고용 자문위원회(the School Employer Advisory Committee)는 실업보험 청구 행정공동체의 회원에게 시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이며, 캘리포니아 학교사업 공무원협회(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의 회계 자료문서는 학구의 직원 및 다른 이익단체가 관련 회계 및 재정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www.lacoe.edu/lacoeweb/orgs/124/index.cfm?showMore=yes).

(12).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학구(Los Angeles County School Districts)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지역정부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지역정부의 학구(school district)에 속해 있으며, 이 학구는 다른 지역기관들인 시, 타운, 카운티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⁷⁾. 이러한 학구는

7) 알래스카(Alaska) 주에서는 지역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공립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원회(school boards)에 의하여 학구의 정책, 예산 및 세금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교육장이 관할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위원이 전문적인 교육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은 선출직이며, 교육장을 임명한다 (李正寬, 1999, pp. 150~157; www.ed.gov/NLE/USNEI/us/org-us.html; www.cde.ca.gov/executive; Jeanne H. Ballantine, 1983, pp. 152~155).

(13). 인사위원회(Personnel Commission)

주 정부의 법률 하에, 인사위원회는 실적을 기반으로 고용인의 선택 및 유지를 촉진하는 교육이 아닌 분류된 서비스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을 수립하는 책임을 진다 (<http://personnelcommission.com/ABOUTPC.HTM>).

4.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

교육자치구는 가장 보편적인 특수목적의 지방자치정부이며, 이들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교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들은 다른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며, 주 정부의 교육부와 주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들은 또한 육아, 보건, 카운셀링, 직업알선 업무에까지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박천오외 8인, 1999, p. 150).

로스앤젤레스시를 비롯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역에 대한 교육은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th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에서 담당하고 있다. 통합학구는 2000년 7월에 지역구(Local District)에 자치권을 가지는 11개의 커다란 하부 지역구(sub-districts)로 재조직하면서 시작했으며, 이에 이전에는 중앙사무실에서 수행된 많은 기능, 인사 및 재정 관련 사무가 학교와 지역구로 위임되었다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this.html). 캘리포

니아 통합학구의 조직기구표는 [부록 3-18]과 같다.

5. 지역정부의 하급행정조직

지역정부인 카운티의 하급행정조직인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는 시민에게 물과 전기를 공급하며, 구급차, 경찰, 공중위생 및 불을 제공하고, 도로 및 공원을 유지한다 (www.lacity.org/CLK/cps/govtglnc/id29.htm). 로스앤젤레스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88개 시 중의 하나이며, 시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www.co.la.ca.us/overview.htm). 로스앤젤레스 시 단위에서는 교육에 관한 별도의 행정조직은 없고 카운티 또는 통합학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4절 캐나다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국가방어, 무역 및 상업, 은행 및 화폐제도, 형법, 시민권, 어업, 항공, 철도, 통신 및 원자력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는 교육, 재산 및 시민권, 재판집행, 보건, 천연자원, 사회보장 및 도시설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www.cio-bic.gc.ca/facts/index_e.html; www.communication.gc.ca/facts/govt_e.html). 캐나다의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19]와 같다.

나.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캐나다에 있어서의 교육은 주(province)정부의 책임이며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기구조직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

의하기 위하여 1967년에 캐나다 주 교육부장관 자문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를 설치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교육에서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등과정 후 교육, 노동시장 훈련, 제2 공용어 교육훈련에 재정을 지원하며, 원주민, 군인 및 부양가족, 연방의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캐나다의 학교는 주(province) 및 영지(territory)⁸⁾마다 다양하나 공립학교(public schools),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독립학교(separate schools), 사립학교(private schools)로 구성된다 (www.communication.gc.ca/facts/educ_e.html).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주 정부의 행정조직

지방자치정부로는 시, 타운, 마을(villages), 카운티, 지구(districts), 대도시 영역 등이 있으며, 급수, 하수와 오물처리, 도로, 거리조명, 빌딩건축 규칙, 공원, 운동장, 도서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지방교육법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회(school board or commission)에서 운영한다 (www.parl.gc.ca/36/refmat/library/forsey/provmun-e.htm).

주 정부 차원에서의 교육은 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고 있다.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Nunavut,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Yukon Territory 등 7개 주정부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표기하고 있으나, Quebec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으로, British Columbia는 선진교육부(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Manitoba에서는 교육훈련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8) Territory: 준주(準州).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아직 주(state)로 인정되지 않는 지방을 말한다(Sisa Elite English-Korean Dictionary, 2001, 서울: 시사영어사, p. 2200).

Youth)로, Northwest Territories에서는 교육문화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Employment)로, Alberta에서는 학습부(Ministry of Learning)로 표기하고 있다 (www.canada.gc.ca/othergov/prov_e.html). 앨버타 주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0]과 같다.

나. 주 정부의 교육행정조직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제도가 없으며 교육은 주 정부의 책임이다. 앨버타 주의 교육감은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Superintendent of Schools Regulation, 1 (c)-3.), 앨버타주의 학습부는 통신국, 법인국, 기초학습국, 성인학습국, 도제 산업훈련국, 정보 전략국, 제도개선 보고국 등 7개의 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www.learning.gov.ab.ca/departement/about.asp). 앨버타주 학습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1]과 같으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www.learning.gov.ab.ca/departement/orgchart/descriptors.asp#BasicLearning)

(1). 통신국(Communications Division)

통신국은 학습제도에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에 관한 전략적인 조언 및 기획 서비스, 특수화된 쓰기 및 편집기술을 제공한다.

(2). 법인국(Corporate Services Division)

법인국은 교육재산세를 부과하고, 학교재정에 대한 회계 분석, 학습자원의 매매, 생산 및 분배를 담당하며, 인적자원 관리, 재정 및 회계관리, 법률 서비스, 행정·재정지원, 법인 기록관리 및 인쇄물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3). 기초 학습국(Basic Learning Division)

기초 학습국은 표준 및 절차(Provincial Standards and Processes)를 재검

토, 조사 및 투자를 하고 학교교육법 및 정책과 규정을 관리하며, 취학전 교육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관리, 생애교육, 원주민 교육, 학습자료 지원, 제2 외국어 교육, 교육과정, 학습 및 교수자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4). 성인 학습국(Adult Learning Division)

앨버타주의 성인학습제도와 관련하여 정보 및 재정지원, 평생교육을 위한 성인 학습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지원하며, 국가와 개인소유의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금지원, 프로그램 승인,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비보조, 사업계획 및 정보 제공을 제공한다.

(5). 도제 산업훈련국(Apprenticeship and Industry Training Division)

도제제도 및 산업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훈련을 지원하고 고용주의 직업 소개소(trade shops), 도제와 훈련받는 사람을 등록·감독하고 평가과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도제의 기술적인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훈련장소·훈련을 상호교환하고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조정하며, 프로그램 개발활동 분야의 통신 및 조정을 촉진한다. 지방의 산업표준과 도제 및 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간의 레드실(Red Seal) 추천제품을 포함하여 지방 산업조사, 노동시장문제 연구를 담당하고, 데이터 표준을 개발한다.

(6). 제도개선·보고국(SIR: System Improvement & Reporting Division)

지방 학습제도를 개선하고, 책임구조, 성과지표, 측정 및 목표를 개발하고 계획 및 예산활동을 지원하며, 연례 결과보고, 3년 중기계획, 학생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방침 등을 통하여 성과를 감독, 측정하며 평가한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평가하며, 지방학습제도의 성과를 공개한다.

(7). 정보전략국(ISS: Information & Strategic Services Division)

원주민 정책과 국가 및 국제교육에 관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보관리전략계획 개발 및 수행, 정보 및 기술 지원체제와 기능을 관리한다. 또한 교실 및 원거리학습 기술개발 및 평가를 지원하고, 학습 기술발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의 직업개발 방침을 제공하며, 지방 네트워크를 통한 웹사이트 유지를 포함하여 전자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방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에드몬튼시(Edmonton City)는 앨버타주의 수도로서 캐나다에서 다섯 번째 큰 자치도시이다. 에드몬튼 시의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의회에 의해 임명된 시 매니저는 의회의 정책을 수행하고 관리한다. 에드몬튼시 차원에서 교육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없다 (www.gov.edmonton.ab.ca/corp_services/financial_management/ar_2000.pdf, pp. 2-8).

나.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조직

(1). 현지 근무실

지방정부의 교육은 주 정부의 책임으로 현지 근무실(Office of the Field Services)의 지역부(Zone Services Branch)에서 담당한다. 지역부는 앨버타 주를 북부, 북부 중앙, 중앙, 남부중앙, 남부 등 5개의 지리적인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Aboriginal communities)를 포함하여, 학교와 앨버타 학습부사이에 쌍방향 통신을 촉진하고, 교육과정, 학습 및 교육자원, 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특별 프로그램 및 프랑수어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www.learning.gov.ab.ca/departments/orgchart/descriptors.asp#BasicLearning).

(2). 지구(District), 지역(Division) 및 위원회(Board)의 설치

앨버타주는 공립학구, 학군, 독립학구 및 지역학군을 설치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공립학구(the Public School District)와 학군(the School Division)은 종교단체 및 사립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담당하며, 학군은 1개 이상의 공립학구로 구성한다. 독립학구(the Separate School District)는 종교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로 구성되며 지역학군의 한 구(ward)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역학군(the Regional Division)은 기타 지역의 학교로 구성되며, 2개 이상의 학구·학군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학구 또는 학군은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는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다(www.gov.ab.ca/qp/ascii/Acts/WPD/S03P1.TXT).

제5절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조직

1. 중앙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정부가 외교, 통상, 국방과 이민정책 분야를 맡고, 주(State)와 테리토리(Territories) 정부는 교육을 포함하여 나머지 분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www.australia.or.kr/korean/html/government_system_kr.htm; www.dfat.gov.au/facts/system_of_government.html). 연방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2]와 같다.

나.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은 교육의 권한을 각 주(州)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주 및 테리토리 정부에서 학교 및 직업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진다. 중앙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포괄적인 목표 이외에는 교육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형태나 방향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www.dfat.gov.au/facts/education.html; 백종역, 1996, pp. 339~341).

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는 성인교육 외의 교육, 과학정책, 과학 및 기술에 대한 연구, 새로운 도제제도를 포함한 훈련, 연구정책 조정 등을 관장한다. 하부조직으로는 5개의 국(Division)과 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는 2개의 그룹과 1개의 부가 있고, 6개의 주 및 테리토리 사무실이 있다 (www.dest.gov.au/annualreport/2001/c2/2b.htm). 교육과학훈련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그림 3-23]과 같다.

(1). 감사부(Audit Branch)

감사부는 부(the Department) 내의 관행과 제도의 효율성 개선, 외부 감시 제도의 접근지원, 주요과정의 재개발 및 실행, 정보기술체제에 관련한 활동, 부(the Department)의 계획 재검토, 재정감사를 담당하며, 원주민 교육실을 포함한 주 및 국가사무실을 운영한다 (www.dest.gov.au/directory/audit.htm).

(2). 법인국(Corporate Services Division)

법인국은 인사 및 노사관계, 재산 및 여행, 구매업무를 관리하며, 부(department)의 사업전략과 연결되는 내·외부의 통신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며, 예산과정을 포함하여 부(department)의 법적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한다 (www.dest.gov.au/directory/audit.htm).

(3). 고등교육국(Higher Education Division)

고등교육국은 해외취득 기술등록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정책개발 및 집행, 고등교육에 관한 입법계획, 평가, 통계, 홍보, 직원채용, 인터넷 사이트 관리, 지역문제와 노동력 문제에 대한 정책조언,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제공을 담당한다 (www.dest.gov.au/highered/structure.htm).

(4). 국제분석 평가국(International, Analysis and Evaluation Division)

교육훈련의 국제간 협력, 연구분석, 교육훈련 서비스의 해외수출 촉진, 시장조사 및 분석, 교육훈련 공동체의 국제화 프로그램 제공, 해외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교육훈련문제의 평가, 조사 및 분석, 교육훈련 영역에의 기회균등과 비차별 촉진 등을 담당한다 (www.dest.gov.au/iae/; www.dest.gov.au/iae/branches/aei.htm).

(5). 정보 및 전략 그룹(Information & Strategy Group)

기록 및 도서관 업무를 포함한 정보, 미디어, 마케팅 및 공공정책, 기업통신 정책 및 정보기술 이용을 관리하며, 정책과 교육분야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문제에 전략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기술자원 구매를 관리하고, 내외부의 관련자와의 공동협력을 증진한다 (www.dest.gov.au/itssg/default.htm).

(6). 학교국(Schools Division)

학교국은 공·사립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교육정책 개발 및 수행, 재정적인 보조계획을 집행한다. 이 계획은 정기적인 재허가 및 기본 허가,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성과 향상을 포함하여, 학교약물교육, 원주민교육 원조, 원주민교육 계획, 기초교육, 언어, 질적인 성과, 시민권·기업 및 생애교육을 포함한다 (www.dest.gov.au/schools/structure/index.htm#Executive).

(7). 훈련 및 청소년국(Training and Youth Division)

숙련된 노동력 창조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도제제도와 직업준비를 위한 기회를 촉진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직업까지 명확한 진로를 조성하고, 젊은 이에게 명확한 직관을 증진시키며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가 지도력을 제공한다 (www.dest.gov.au/ty/branches.htm).

(8). 미래진로 전략그룹(Future Pathways Strategy Group)

청소년활동계획전략(the Youth Pathways Action Plan Taskforce)과 각 부서의 전략에 대한 부(department)의 투입(input)을 관리하기 위하여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 이 부서는 또한 부의 전략과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조정하는 국가 청소년회의 및 국가 청소년개발전략 운영을 담당한다. (www.dest.gov.au/annualreport/2000/html/chapter_2.htm#1_2)

(9). 주 및 테리토리 사무실(State and Territory Offices)

주 및 테리토리 사무실은 지역에서 부(department)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그들은 지방수준에서 정부와 다른 기관들을 광범위하게 연결한다. 주와 테리토리 관리자는 국가사무실(National Office)의 우선 순위와 정책요소에 따라 정책해결 지원과 중앙 정부 및 주 정부간의 사업의 협정을 담당한다 (www.dest.gov.au/annualreport/2000/html/chapter_2.htm#1_2).

2. 주 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주 정부의 행정조직

빅토리아주 정부는 총독(the Governor), 의회 및 사법부로 구성되며 국왕을 포함하는 웨스트민스트 정치제도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은 주 정부 교육 훈련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www.dpc.vic.gov.au/servlet/rwp-ps?

/dpc/dpc.nsf/SearchDocs/About+Victoria). 빅토리아 주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4]와 같다.

나. 주 정부의 교육행정조직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체제의 중요한 특징은 사립학교가 독립적이어서 교육훈련부(DE&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사립학교에는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로부터 최근에 설립된 종교학교 또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고등교육기관은 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율적인 기관이나 1974년이래 중앙정부가 고등교육에 많은 재정지원을 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백종억, 1996, pp. 356~358).

공인 교육위원회(the Registered Schools Board)는 교육법에 의거 의회에서 총독에 의해 지명되는 의장을 포함하여 정부요원 네 명과 비 정부 요원 네 명 등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교육법에 의거 주립학교 외의 학교와 교사를 등록하고 유지하며, 교육법 및 공인 교육위원회 법규에 의거 학교승낙(compliance)을 감독하며 해외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를 추천한다(www.sofweb.vic.edu.au/rsb/AboutUs/regBoard.htm). 빅토리아 주의 교육훈련부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5]와 같으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부(DE&T)에는 교육훈련장관(Minis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서비스 장관 겸 청소년장관(Minister for Education Services and Minister for Youth Affairs) 등 두 명의 장관(Minister)이 있어 각각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www.deet.vic.gov.au/deet/about/minister.htm). 교육훈련장관은 빅토리아주 내의 공립학교,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TAFE: training and further education) 연구소, 대학, 성인 및 지역사회 교육센터와 많은 등록 훈련조직을 감독하며, 품질높고, 흥미로우며 학습장애가 없는 공교육체제를 구

축한다(www.deet.vic.gov.au/deet/about/kosky.htm). 교육 서비스장관 겸 청소년장관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생수송,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육연구소와 학생복지, 정보기술과 같은 영역을 담당하며, 청소년 업무 분야에서는 지역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발전계획, 학생복지, 마약 교육과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한다(www.deet.vic.gov.au/deet/about/gould.htm).

하부조직으로는 학교교육국, 부 서비스국, 청소년국, 훈련·고등교육국 및 직무조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ette.vic.gov.au/about/index.htm).

(1). 학교교육국(Office of School education)

학교교육국은 학교와 학교 공동체에 대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생성적표준 수립, 훈련 및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개발 및 훈련 지원, 통신·멀티미디어 및 정보기술전략을 통한 교수학습 혁신, 직업적인 미래의 교육훈련제도 수립을 담당하고, 카톨릭 교구학교 등 제도적 학교(systemic schools)로 중앙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군과 법률적으로 각각 분리된 독립체 학교인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s) 등의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교육을 받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www.deet.vic.gov.au/deet/pdfs/deet00.pdf, pp. 47~48; www.deet.vic.gov.au/deet/pdfs/deet00-01.pdf, pp. 32~34; www.sofweb.vic.edu.au/standards/index.htm; www.sofweb.vic.edu.au/scsb/index.htm; www.sofweb.vic.edu.au/welfare/branch.htm;).

(2). 부의 서비스국(Office of Departmental Services)

부 서비스국은 예산 및 재정관리, 회계정책과 과세, 전자상거래, 정보와 문서 분류, 인터넷 접속 제공, 능률과 생산성 개선, 기능(skill)개발, 인적자원관리제도를 통한 인사행정, 급료명세서 기록관리, 학교설립 및 재산관리, 공유 서비스 제공 등 인적자원, 정보통신기술(ICT), 재정 및 행정서비스 공유에서 부 전체를

망라하여 제공한다 (www.deet.vic.gov.au/deet/pdfs/Deet01.pdf, pp.17~156; www.sofweb.vic.edu.au/facility/facild/index.htm; www.deet.vic.gov.au/deet/media/pdfs/DEET_Enhancement.pdf, p. 43).

(3). 청소년국(OFY; The Office for Youth)

청소년국은 정부의 정책개발, 기획 및 서비스 제공하고, 관계 있는 정부 및 주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많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관리 또는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갖는다 (www.deet.vic.gov.au/deet/pdfs/DEET_2000-01_Youth.pdf, p. 107).

(4). 직무조정국(Office of Portfolio Integration)

직무조정국은 정책개발 및 직무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정하며, 법인기능, 통신 및 의무교육 후의 학생진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평가하며 회계감사 등을 수행한다 (www.deet.vic.gov.au/deet/pdfs/deet00.pdf, pp. 98~119; www.deet.vic.gov.au/deet/pdfs/Deet01.pdf, p. 17).

(5). 훈련 고등교육국(the Office of Training and Tertiary Education)

훈련 고등교육국은 주 정부의 훈련제도와 관련하여 성과감시, 재검토, 품질개선 및 정책수행, 학습교육 혁신, 정책개발 및 산업분석, 고용정책 개발, 성인·지역사회 및 평생교육,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제도개발, 규정 및 재정관리, 고등교육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연방정부에 대하여 빅토리아주 대학교의 이익을 대표한다 (www.ette.vic.gov.au/about/key.htm).

3. 지방정부의 행정 및 교육행정조직

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

빅토리아주의 지방정부에는 회계감사관(Auditor-General), 의회에 의해 임명된 시장(Chief Executive Officer), 의회(Council) 및 의원이 있다. 의회는 시의회(City Council), 시골의회(Rural City Council) 및 주의회(Shire Council)⁹⁾로 구분되며, 시의회의 구역은 도시의 특성이 많고, 시골 의회의 구역은 도시와 시골의 특성이 섞여있고, 주의회의 구역은 시골 특성이 많다(www.dms.dpc.vic.gov.au/). 빅토리아주 지방정부의 하나인 베이사이드 시(Bayside city)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부록 3-26]과 같다.

나.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베이사이드 시에서의 교육은 별도의 교육행정조직은 없으며, 지방정부의 한 부서인 공공서비스부(The Community Services) 내의 가족 및 아동서비스과(the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sec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원 및 유치원아 교육에 한정된다(www.bayside.vic.gov.au/servicesA_L/children/child_home.htm).

9) Shire(州)는 카운티(county)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 영국에서는 Yorkshire 등 주로 카운티 이름의 語尾로 쓰인다(시사엘리트 영한사전, 2002, p. 1988).

제4장 한국과 주요국가와의 교육행정 비교

제1절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 비교

1.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문부과학성과 도도부현과 관계는 지휘·명령의 관계가 아닌 지도·조언의 관계이며, 시정촌에 대하여도 직접 지도 및 조언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교육·과학기술·학술, 문화 및 스포츠의 진흥과 보급에 관한 국가행정 사무 일체를 수행하므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범위가 넓다.

우리나라의 시립 또는 도립대학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고 지도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도부현 지사(知事)가 도도부현립 대학을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교육위원회 설치가 불가능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시정촌장도 시정촌립 대학을 설치운영 및 관장하며,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정촌립 대학을 제외한 관내의 모든 교육기관을 관장한다. 따라서 도도부현 지사 및 교육위원회는 시정촌의 촌장 및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다.

또한 도도부현은 부립 및 사립대학을 비롯하여 사립의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인, 문화학술연구, 체육 및 평생교육, 직업훈련과 고등기술 전문학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광범위하게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는 <표 3-1> 과 같다.

〈표3-1〉 한국과 일본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구분	한 국	일 본	
중앙교육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인적자원부	문부과학성
	분장업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	-교육, 과학기술, 학술 -문화 및 스포츠
	조직의 성격	-지방정부와는 지도·감독·지시관계(상하관계)	-지방정부와는 지도·조언관계(대등관계)
지방교육행정조직	조직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교토포부교육위원회
	분장업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사무
	조직의 성격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제 집행기관으로서 일반행정에서 독립(중요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집행기관을 교육청이라 칭함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행정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로서 독립성 유지(지방의회 의결 불필요)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을 교육청이라 칭함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도 설립 -도도부현립 대학은 지사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은 교육위원회에서 관장.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업무의 성격	-대학교 설립 및 지도감독은 교육인적자원 소관으로 교육감이 관여불가 -시·도지사는 대학설립·운영가능하나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교육에 대하여 관여불가 -시·도지사가 도서관 설립운영, 직업교육, 청소년 수련 등 일부를 담당하나 교육청과는 무관하게 운영 -교육감과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지시관계(상하관계)	-도도부현 지사는 시정촌립 대학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지도·조언 가능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시정촌립 대학 및 시정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지도·조언 가능 -교토포부의 경우, ·총무부 문교과에서 교토포부립 대학, 사립학교, 사립전수학교, 사립 각종학교 학교법인 및 종교법인에 관한 사무 담당. ·기획환경부 문화학술연구도시 추진실에서 문화학술연구도시 업무담당. ·스포츠 평생학습실에서 체육 및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민 노동부(府民 勞働部) 능력개발과에서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고등기술 전문학교 업무담당.	
지역교육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	시정촌 교육위원회
	조직의 성격	-시·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만 관장 -의무교육에 관한 입학사무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행정위원회(합의제 집행기관) -시정촌립 대학은 시정촌장이, 기타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관장. -교토포시의 경우, ·총무국 총무부 총무과에서 시립 예술대학 운영 ·이재국 재무부 조도과(調度課)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물품구입 및 공사계약 담당. ·취학연령아동 및 학생 취학에 관한 사항은 하급행정기관인 구장(區長)에게 위임.
	분장업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	-교육, 학술, 문화에 관한 사무

2.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담당관 2국 10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교토토부 교육위원회 사무국인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2부 1실 9과 50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교토토부 교육청에는 복리과·동화교육실 및 문화재보호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리과는 공립학교 공제조합, 종합건강진단, 대부 및 의료급부, 조합원증 발급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토토부 내에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동화교육실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평등 및 차별폐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문화재보호과는 유적발굴조사, 천연기념물 지정, 사적 및 명승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는 <표 3-2> 와 같다.

<표 3-2>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한국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본 (교토토부 교육위원회 사무국)		비 고
국	과	부	실·과	
공보담당관		관리부	총무기획과	
감사담당관			관리과	
교육 정책국	초등교육과		교직원과	
	중등교육과		복리과	
	과학정보 기술과		동화교육실	
	교육지도과	학교교육과 (장애아교육실)		
기획 관리국	평생교육 체육과	지도부	고교교육과	
	총무과		보건체육과	
	기획인적 자원과		사회교육과	
	재정과		문화재보호과	
	행정과			
	교육시설과			

제2절 한국과 미국 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한국과 미국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조직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조직법에 의거 설치

된 법적인 기관이나 미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및 교육행정조직에 관한 관련법률이 없으며 교육부도 관습상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교육은 주정부 및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주정부의 교육감은 주 교육부장관 및 교육위원을 겸하고 교육위원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나 행정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교육은 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부, 교육위원회, 주 및 고객서비스장관 등 3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 교육부는 주지사의 보조기관임과 동시에 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이기도 하다.

또한 주정부의 주 및 고객서비스 장관 밑의 총무부 공립학교 건축실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시설계획 및 배치, 학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담당하고, 교사퇴직제도부에서는 교사퇴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도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할 교육구에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교육은 물론 육아, 보건, 카운셀링, 직업알선 등 거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카운티의 하부 자치정부인 로스앤젤레스시에는 별도의 교육행정조직이 없고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통합학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는 <표 3-3> 과 같다.

2.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국 12개 담당관·과로 조직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1 정책보좌관, 2 부교육감, 8부, 23실·과로 조직되어 있어 한국의 교육행정조직에 비해서는 업무가 대단히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아동, 청년 및 가족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학습을 촉진하며 균형적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청소년·가족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평등한 교육접근을 위해 교육평등·접근 지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및 의회와의 업무연락을 위한 정무부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3> 한국과 미국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중앙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인적자원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부)
	조직의 성격	-법적인 기관 -교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국가차원의 교육에 관한 기본조직이나 관련법이 없으며, 관습상의 명칭에 불과 -교육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책임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	-주정부의 교육지원 -지방학교제도, 민간, 군인, 사회, 부모 등에 대한 교육 -연방정부 지원연구 평가
지방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교육부)
	조직의 성격	-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 -교육위원회: 합의제 의결기관 -지방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교육자치단체. -교육감은 교육위원 겸임불가 -교육감은 독립제 집행기관	-교육부는 주지사의 보조기관이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집행조직 -교육위원회: 행정위원회 -교육감은 교육위원 및 주 교육부 장관을 겸임. -교육은 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 주 및 고객서비스장관이 관장 ·총무부 공립학교 건축실에서 학교시설계획 및 배치, 자금지원 ·교사퇴직제도부에서 교사퇴직위원회를 운영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주지사 또는 주교육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 (캘리포니아 교육위원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 -지방의회의 당연직 의원 -이사회(the Board of Trustee)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당연직 위원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성인교육, 교수학습 개선, -교육행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 -과학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 -주 교육부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개선.
지역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카운티 교육청 (LA County Office of Education)
	조직의 성격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장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 -유치원, 초·중 및 중학교 교육에 대하여 책임. -학령아동 입학사무에 대하여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위탁.	-카운티의 행정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관 -관하에 학구제를 운영하며, 학구의 교육장은 학구교육위원회에서 임명 -학구교육위원회는 지역정부와는 독립하여 운영하며, 정책, 예산 및 세금을 결정 -카운티의 하부 자치정부인 로스앤젤레스 시에는 별도의 교육행정조직이 없고 카운티 통합학구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 -교육감은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의해 임명
	분장 업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학교 및 학구 지원 -예술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운영

〈표 3-4〉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한국 (부산광역시교육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비 고
국	과	부교육감	부 과	
	공보담당관		수석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통신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정책 및 프로그램 담당 수석 부교육감	청소년·가족부	아동개발과
	중등교육과			학습지원·협력과
	과학정보기술과			영양과
	교육지도과		교육과정·지도자부	교육과정구조·교육자원과
평생교육 체육과	고등학교 지도자과			
총무과	전문성 개발·교육과정지원과			
기획관리국	기획인적자원과		교육평등·접근지원부	학교개선과
	재정과			교육지원제도과
	행정과			특수교육과
	교육시설과			주립 특수학교과
			학교·학구 책임과	
		책임 및 행정수석 부교육감	법률·회계감사부	법무과
				회계감사·조사과
				기획 평등실
			책임부	정책·평가과
				표준·평가과
			재정기술·행정부	교육 출판과
				회계·행정과
				인사과
				학교시설계획과
			징무부	과학기술과
		징무실		
		연방관계실		

제3절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 비교

1.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한국과 캐나다 정부와의 교육행정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첫째로, 캐나다는 중앙정부차원의 교육행정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지방정부인 주 정부에 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교육부 장관 자문회의를 설치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그리고 주마다 각기 교육연한이 다르다. 둘째는 앨버타주의 각 학교

는 학습부(the Ministry of Learning)장관에 의해 지역별로 각각 공립학구, 사립학구, 독립학구, 학군 또는 지역학군 위원회와 학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역교육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대학교육도 지방정부의 책임이다. 셋째, 앨버타주의 경우 교육감은 각 위원회의 지명에 의해 주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임명된다. 넷째, 모든 재산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각 학군 및 학구 위원회에 의거 재산의 수익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섯째, 주마다 교육행정부서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는 점이다.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Nunavut, Prince Edward Island, Saskatchewan, Yukon Territory 등 7개 주정부에서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표기하고 있으나, Quebec주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으로, British Columbia주는 선진교육부(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 Manitoba주에서는 교육훈련청소년부(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로, Northwest Territories주에서는 교육문화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Employment)로, 그리고 Alberta주에서는 학습부(Ministry of Learning)로 표기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정부차원에서는 교육행정조직이 없고 학구 또는 학군이 설치되어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학구 또는 학군 교육감은 학구 또는 학군 교육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주정부 장관의 승인으로 선출되나 주정부로부터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비교 내용은 <표 3-5> 와 같다.

2. 한국과 캐나다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 체계를 비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2국 12과·담당관의 체제로 되어 있으나 캐나다 앨버타주 학습부의 경우에는 7

〈표 3-5〉 한국과 캐나다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구 분	한 국	캐 나 다	
중앙 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인적자원부	-
	조직의 성격	-교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법률에 의하여 조직.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이며,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행정조직은 없음. -주 교육부장관 자문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주 마다 교육연한이 다름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	-
지방 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앨버타주 학습부(Ministry of Learning)
	조직의 성격	-정책결정: 교육위원회 -집행: 교육감 -지방정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교육자치단체. -대학교는 지방정부에서 설립운영 가능하나 중앙정부에서 관리·감독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대하여만 관리·감독	-정책결정: 주 정부 및 교육위원회 -집행: 주 정부장관 및 교육감 -주 마다 명칭이 다르며, 선출된 장관에 의해 지휘됨. -주 정부의 한 부서 -공립학구, 독립학구, 학군, 지역학군을 설립하여 자치적 실시 -주 정부에서 대학교까지 관장.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	-주 정부 장관 및 교육감은 임명.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교육, 직업훈련, -통신, 재산과세
지역 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
	조직의 성격	-교육장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 -시·도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음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는 학구, 중·고등학교는 학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적인 조직이 아님.	-지역정부 차원의 교육행정조직은 없고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 -공립·사립·독립학구, 학군 또는 지역학군이 지역교육을 담당 -학구 또는 학군의 교육감은 학구·학군 교육위원회가 지명하고 주정부 장관이 승인 -학구 및 학군은 주 정부로부터 독립성 유지
	분장 업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전 업무를 관장 -학구 및 학군에서 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국(Division) 15부(Service) 65과(Section)·부(Branch) 체제로 되어 있어 업무의 성격 및 범위나 규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공립학구, 독립학구, 사립학구, 학군 및 지역학군 등의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교육청과 그 역할이 비슷하며, 그 권한도 비록 교육부장관의 감독아래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관내 재산소유자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권한도 보유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한국과 캐나다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한국 (부산광역시교육청)		캐나다 (앨버타 학습부)		비 고
국	과 · 담당관	국	부(service)	
	공보담당관	통신국	운용부	
	감사담당관		미디어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법인국	인적자원부	
	중등교육과		예산, 학교재정 및 보고부	
	과학정보기술과	운영부		
	교육지도과	지방표준절차		
기획관리국	평생교육체육과	기초학습국	지역서비스	
	총무과	성인학습국	프로젝트 관리조정	
	기획인적자원과		기관 및 지역사회	
	재정과		학습자보조	
행정과	사업통합조정			
	교육시설과	도제 및 산업훈련국	산업프로그램 표준	
			지역위원회 및 산업통합	
			고객서비스	
			기관 및 국 서비스	
		제도개선 및 보고국	프로젝트 조정	
			성과측정 및 보고	
			학습자 평가	
		정보 및 전략서비스	학습제도 질 관리	
			정책부	
			법제도 계획부	
			정보기술관리	
			학습기술	
			관련자 직무기술	
			향토교육정책 재평가 켄트	

제4절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 비교

1.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의 헌법은 교육의 권한을 각 주에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일차적으로 주 정부와 테리토리의 책임이며, 학교 및 직업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체로 세부적인 집행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정부는 법률에 규정된 포괄적인 목표 이외에는 교육적인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는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교육은 교육훈련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장관, 교육서비스 장관 겸 청소년장관 등 두 명의 장관(Minister)이 각각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육훈련 장관은 공립학교, 직업교육훈련 및 평생교육 연구소, 대학, 성인 및 지역사회 교육센터와 많은 등록 훈련조직을 담당한다. 교육 서비스장관 겸 청소년장관은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수송,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육연구소와 학생복지, 정보기술과 같은 영역을 담당하며, 청소년 업무 분야에서는 지역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발전계획, 학생복지, 마약 교육과 노동력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기획·조정·및 감독책임을 갖고 있으며, 전문적인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별도의 교육행정조직이 없으나 빅토리아주 베이사이드시의 경우 공공서비스부 가족·아동과에서 보육원 및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비교내용은 <표 3-7> 과 같다.

2.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과 해외 유학생 관리,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제국(International Division)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 정부 이하의 지역정부에서는 보육원 및 유치원 아동에 대한 교육에만 한정하여 공공서비스부(the Community Service Depart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내용은 <표 3-8> 과 같다.

〈표 3-7〉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행정체제 비교

구 분	한 국	오스트레일리아	
중앙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인적자원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교육과학훈련부)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기술계속교육
	조직의 성격	-교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	-교육은 헌법에 의거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책 임 -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목표만 관리
지방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훈련부)
	조직의 성격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독임제 집행기관 · 정책결정: 교육위원회 · 집행: 교육감 -지방정부에서 독립된 교육자치단체.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 -대학교육은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이 하 각급학교 교육은 지방정부가 책 임.	-주 정부의 한 부서 · 정책결정: 의회 · 집행: 장관 및 교육위원회 의장 -2명의 장관이 교육, 의무교육·훈련 및 고용, 청소년 부문을 관장.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총독에 의해 지명 -주정부가 의무교육, 대학교, 성인교육까지 관장. -사립학교는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립학교와 비슷한 교육과정 운영 -고등교육분야는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나 상당 한 자율성 유지 -공인학교위원회에서 주립학교 설립 및 교사등 록을 담당(의장은 의회에서 총독에 의해 지명)
	분장 업무	-인적자원개발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초등 및 중등교육, 훈련 및 성인교육 -고용 프로그램 및 청소년 훈련
지역교육 행정조직	조직명	교육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
	조직의 성격	-교육장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 -유치원, 초등 및 중학교 교육에 대하 여 책임	-교육은 주정부의 책임 -지역정부(빅토리아주 베이사이드시의 경우)의 공공서비스부 가족·아동과에서 보육원 및 유 치원 교육을 담당
	분장 업무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

〈표 3-8〉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비교

한국(부산광역시교육청)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주)		비 고
국	과	실	국	
	공보담당관	고용훈련·제3 교육실	고등교육국	
	감사담당관		고용 프로그램국	
교 육 정책국	초등교육과		직업교육·훈련국	
	중등교육과		정책·기획국	
	과학정보 기술과		교수학습·혁신국	
	교육지도과		품질보증·재평가국	
	평생교육 체육과	지역사회·성인교육국		
기 획 관리국	총무과	부 서비스실	재정국	
	기획인적자원과		시설국	
	재정과		정보기술국	
	행정과		인적자원국	
	교육시설과	공용 서비스국		
		학교교육실	사립학교국	
			정책기획국	
			교수학습 혁신국	
			표준·재평가국	
			학교·지역사회 개발국	
		직무 통합실	지역국	
			법인 관계국	
			전략기획·자원할당국	
			성과·회계감사국	
		청소년실	통신국	
			국제국	
			-	

제5절 국가별 교육행정의 종합적 비교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서로 공통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면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대체적인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은 지방정부(주 정부) 차원의 책임이며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다른 나라는 지역정부에 대학교육까지 위임하고 있다. 둘째, 지방 교육행정조직은 지방정부의 부처 또는 행정위원회 형태이며, 지방정부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하고 교육행정의 일부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은 첫째, 캐나다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교육부처가 아

예 존재하지 않고, 미국은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법적기관이 아닌 관습상의 기관이며 국가차원의 교육에 관한 법률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지역교육 행정기관의 명칭의 다양성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청, 일본은 행정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미국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캐나다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학습부(Ministry of Learning), 오스트레일리아는 교육과학훈련부(Minister for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와 빅토리아주는 교육훈련부(The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로 되어 있다. 셋째, 업무의 다양성이다. 일본은 인권교육을 위한 동화교육실, 공립학교 공제조합을 운영하는 복리과, 유적발굴 및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보호과를 설치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 청소년 및 가족의 건전한 발전, 학습촉진 및 균형적인 영양공급을 위한 청소년 가족부, 학력평가, 포상 및 시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책임부, 생활빈곤과 물리적인 결손아동의 평등한 교육접근을 위한 교육평등 접근지원부를 설치하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지역서비스부, 성인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조정부, 성인교육을 위한 성인학습국, 무역 및 직업 정책에 관한 도제 및 산업훈련국 등을 두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국, 해외유학생과 국제협정 및 국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국제국, 청소년문화개발 및 정책수립을 위한 청소년실 등이 있다. 이 외에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국가간 비교내용은 <표 3-9> 와 같다.

〈표 3-9〉 국가별 교육행정조직중 주요내용 비교

국별	기관별	조직명칭	조직형태	조직구성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
한국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	부처	-교육은 중앙정부의 책임 -지방정부에서 독립한 교육자치단체로서 교육감의 독립제 집행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시·도에만 설치하고 시·군·자치구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을 설치.
	지역정부	교육청	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지역정부에서 도서관, 청소년 훈련,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행정대상에서는 제외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에서, 그 외의 기타교육은 지방정부의 책임. -지방정부(시·도)에서도 대학교를 설립·운영가능
일본	중앙정부	문부과학성	부처	-교육은 물론 과학, 문화 및 체육을 담당. -도도부현 지사가 도도부현립 대학을 관장.
	지방정부	교육위원회	행정위원회	-시정촌장이 시정촌립 대학설립 가능. -도도부현 지사 또는 시정촌장은 관할 교육위원회의 교육사무에 대하여 직접관장 또는 조인가능.
	지역정부	교육위원회	행정위원회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우리나라에 없는 복리과, 복지과,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동화교육실, 문화재보호과를 설치.
미국	중앙정부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부처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법적기관이 아닌 관습상의 명칭에 불과하며, 교육에 관하여 국가차원의 기본조직이나 법률이 없음.
	지방정부	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부처	-교육은 주 정부 및 지역사회의 책임.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해 임명.
	지역정부	카운티 교육청 (County Office of Education)	행정위원회	-주 정부장관이 주 교육감을 겸임. -주 정부에서 업무일부를 관장. -학구 또는 통합학구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독립적으로 행정.
캐나다	중앙정부	-	-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행정조직이 없으며, 교육은 주 정부의 책임이고 주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
	지방정부	학습부 (Ministry of Learning)	부처	-주 정부마다 교육부의 명칭이 다양하며, 주 교육부 및 교육위원회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을 담당.
	지역정부	-	-	-주 정부에서 초등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까지 관장. -지역교육은 지역정부 차원의 행정조직은 없고 지역학구 또는 학군에서 담당하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주 교육부장관이 승인.
호주	중앙정부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교육과학훈련부)	부처	-교육은 헌법에 의거 주 정부의 책임이며, 교육훈련부 내에 2명의 장관이 관장.
	지방정부	교육훈련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부처	-주 정부에서 의무교육, 대학교육 및 성인교육까지 모두 관장. -지역정부는 보육원 및 유치원교육에만 한정하여 관장.
	지역정부	-	-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주 총독에 의해 임명.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집행은 장관 및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관장.

제5장 지방교육행정조직 개선방향

제1절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정부수립과 동시에 내무행정의 도 학무국에서 출발하여 1952년 최초의 교육자치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직제의 개편이 있었으나 그 기본 바탕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는 전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육 본래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의 정치적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주요 외국의 교육행정조직 형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 및 지방교육행정조직과 광역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조직상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기능이 안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종전과 다름없이 대부분의 주요기능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병준, 고비용 저효율의 개편안, 중앙일보, 1999년 3월 8일자 시론). 이에 따라 교육개혁을 비롯한 많은 행정사항들이 중앙에서 작성되어 일방적으로 지방에 명령되는 종래의 권위주의적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신현석, 2000년 4월, pp. 242-243),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주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정책개발 및 기획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초·중등교육은 물론 대학교육에 관한 집행기능까지 대폭 지방정부에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실

시한 「교원지방직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 교원 51,651명 중 95.6%가 지방직화 될 경우 신분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7%는 교원예우 수준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93.4%가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90.3%는 교육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2002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www.kfta.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교육계가 꾸준히 교육의 지방자치화를 주장해온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인 현제에도 과연 위에서 거론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주민복지 증진,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교육·체육·문화 및 예술진흥,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영역별로 예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청소년 시설·체육·직업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에 서로 업무가 중복되고 있으며 협력 또한 단절되고 있다.

3.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

현재의 지방교육행정조직상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해 생긴 결과이겠지만 지방행정조직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 역할이 모호하고 비효율적이다. 시·도교육청의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 징수, 기채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다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교육자치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일반행정보다 더 처리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교육행정을 비효율적이고 더디게 하고 있으며 업무적인 부담은 물론 교육위원회의 역할마저 모호하게 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근본 원리인 자주 조직권에 관한 문제이다. 대통령령 제15916호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은 시·도간의 기구설치 난립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타당하나 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해 놓고도 다시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시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시·도 교육청의 기구설치를 인구 및 학생 수 기준에 의해 규정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외의 다른 시·도는 기획관리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기능은 인구나 학생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도에나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기구이다.

넷째, 인사 및 장학지도 업무부서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이다. 초등학교 교원인사 및 장학지도 업무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중등학교 교원인사 및 장학지도는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수혜대상에 따라 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이 서로 같은 업무끼리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상승효과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인적자

원개발 및 관리에 관한 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나 업무가 종전의 정원 및 조직 관리에만 치중하여 그 역할이 모호하다. 인적자원은 조직내의 인적자원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을 의미하므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단위기업, 사업주 단체 등 다수의 기관을 유기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정화, 2001, pp. 167-168). 따라서 현재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는 기획실을 신설하여 지방사회차원에서의 업무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여섯째,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소속직원에 대한 복지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행정조직도 이제는 일반 사기업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소속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금, 의료보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생활운영자금 대부, 오락 및 여가시설 등을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고등학교 및 도서관 등의 지도·감독권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문제이다. 시·도교육청은 기획인적자원부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따라 지방교육의 기획 및 정책을 담당하고 고등학교 및 도서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역교육청에 이관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도(道)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지역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여덟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행정기관장으로써 대외적인 행사가 많고 회의가 잦아 청내의 고유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시외 출장이나 연가, 병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결권자가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부교육장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분의 교육장 업무를 위임하여 내부업무를 맡기고 교육장은 주로 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안

1. 고등교육 및 인사업무의 지방정부 이양

윤정일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기능과 역할은 교육기본 정책 수립, 교육과정개발 및 교사교육, 인적자원개발·관리, 통일교육, 국제협력, 학술진흥, 교육정보 및 통계, 교육재정확보·배분 등이라고 한다 (윤정일, 2000년 12월, pp. 170). 김신복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해야 할 기능으로는 전국적·종합적인 교육정책 및 계획수립,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업무, 각 시·도의 구역을 포함하는 광역적 행정업무로서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시·도 교육청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 등을 말하고 있다 (金信福, 1985, p. 41).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관장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그 소속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여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 설패 및 인사·재정 및 사립대학교 법인관리, 교육 및 학생입학 등에 관한 사항도 기획이나 정책기능 아닌 집행기능에 속하며, 초등 및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물론 학생진로 지도까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시·도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및 고등교육위원회에 대한 정책입안, 지원, 정원관리, 감사 및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광역자치단체와의 업무영역 조정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의 제5호에

서 같은 업무로 분류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설치 및 관리, 도서관·운동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육성에 관한 사무 중 시·도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치 및 관리를 제외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성격상 같은 성격의 업무이므로 시·도교육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교육행정조직 개선방안

시·도 교육청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은 현재의 제도와 법규체제를 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안제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도 교육행정조직 개편 방안

첫째, 현재의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안전에 대한 중복적인 심의·의결방식은 지방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저해할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안전에 대하여 시·도 의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도록 하여 중복심의·의결에 따른 행정낭비를 제거하여야 한다.

둘째, 시·도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기획실장 또는 기획관리국장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며,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화하고 정원조정 및 기구설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시·도 교육청의 조직을 비서실, 기획실, 감사담당관, 학교교육국, 평생교육국, 문화예술국 및 행정국 등 2실·1담당관·4국으로 구성한다.

넷째, 비서실을 법정기구화하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과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으로 구성한다.

넷째, 지방교육의 총괄적 기획 및 정책개발의 중장기 계획수립을 담당할 기획실을 설치하여 사회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교육적 수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기획실의 하부조직으로는 기획 및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 법무·의회·전산 및 통계를 담당하는 행정관리담당관, 산·학·연 협조, 공공기관간 협력, 국제협력 및 유학생관리, 각종 자격관리, 고용알선 및 취업정보 관리, 직업훈련, 정원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인적자원개발담당관을 둔다.

넷째, 감사담당관은 감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학교교육국은 장학과·교원인사과·교육과정과, 교육지도과 및 과학기술과로 구성한다. 장학과는 장학지도, 학생배정업무를 관장하며, 교원인사과는 교원채용, 전·출입 및 훈련, 교원 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개발 및 관리,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며, 교육지도과는 학생생활지도, 학생복지, 장학금 제도, 학비보조 및 수련지도, 여성정책을 담당한다. 과학기술과는 과학 및 실업교육, 교육정보, 환경교육 및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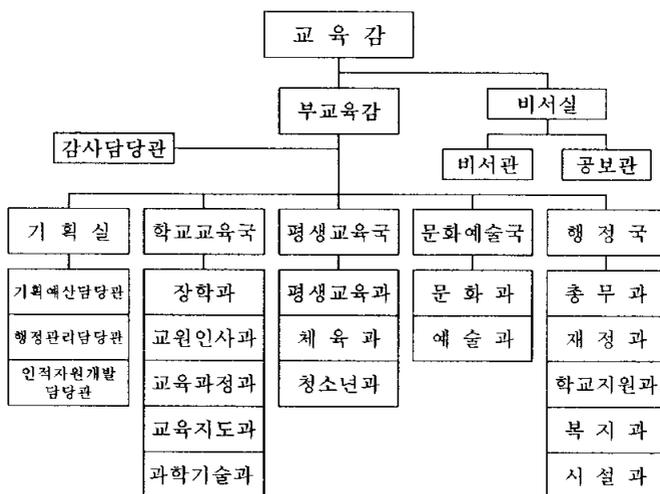
여섯째,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과, 체육과, 청소년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과는 성인교육, 평생교육, 사회직업교육, 학원관리, 도서관 및 기타 성인교육시설을 담당하고, 체육과는 학생체육, 보건위생, 영양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소년과는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행사, 직업 청소년 선도 등 청소년 대책을 담당한다.

일곱째, 문화예술국은 문화과와 예술과로 구성한다. 문화과는 문화재 발굴 및 관리, 유적지 및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예술과는 음악·영상 및 미술, 전시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여덟째, 행정국은 총무과, 재정과, 학교지원과, 복지과 및 시설과로 구성한

다. 총무과는 서무, 인사, 민원 및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재정과는 계약, 경리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며, 학교지원과는 학교설립 및 폐지, 학생수용계획,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지도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등을 관장한다. 복지과는 직원공제회, 연금, 의료보험, 직원에 대한 용자, 오락 및 휴가시설, 편의점 및 판매점을 관장하며, 시설과는 도시계획, 학교부지 선정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재해관리, 각종 공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위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재조직한 시·도 교육청의 기구도표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시·도 교육청 기구 재조직

나. 지역교육청 행정조직 개편방안.

첫째, 지역교육청의 행정조직은 교육장 아래에 부교육장, 감사담당관, 기획관리담당관, 학교교육국, 행정국 등 2담당관 2국으로 구성한다

둘째, 감사담당관은 감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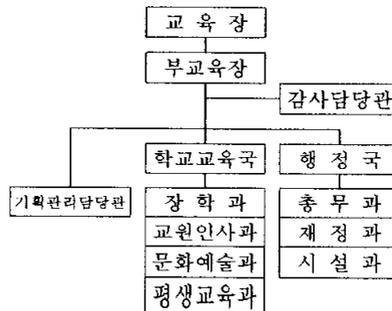
셋째, 기획관리담당관은 기획 및 예산, 의회, 법무, 통계 및 전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넷째, 학교교육국은 장학과, 교원인사과, 문화예술과 및 평생교육과로 구성한다. 장학과는 장학지도, 학생배정 및 학생생활지도업무를 담당하고, 교원인사과는 교원인사 및 훈련, 교원노사협상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재 발굴 및 관리, 유적지 및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며,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사회직업교육, 기술자격관리, 학원·도서관, 청소년 대책, 체육 및 보건·영양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행정국은 총무과, 재정과 및 시설과로 구성한다. 총무과는 청내 서무 및 지방공무원 인사·훈련, 민원 및 비상계획업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수용계획, 학교설립 및 폐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재정과는 계약 및 경리,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시설과는 도시계획, 학교부지 선정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재해관리, 각종 공사업무를 담당한다.

위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재조직한 시·도 교육청의 기구도표는 [그림 3-28]과 같다.



[그림 3-2] 지역교육청의 기구 재조직

제6장 결론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달라 국가간의 교육행정조직에 대하여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행정현상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동조화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비교행정론에 의한 국가간의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비교연구도 우리에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교육이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세계 주요국가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을 살펴보면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장되고 교육자치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조직과 세계 주요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비교행정 차원에서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를 요약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주요국가의 교육은 대체적으로 주정부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에 교육부와 같은 교육에 관한 행정조직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이양되어야 한다.

둘째, 이웃 일본을 비롯하여 모든 주요국의 교육행정에 관한 조직이 주정부의 행정위원회 또는 교육행정부서장 겸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은 교육위원회에 위임하여 현재와 같이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 중복하여 심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주요 국가의 주정부에는 고등교육위원회 또는 대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은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위원회 또는 고등교육위원회가 담당하며, 교육감은 고등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획인적자원부도 대학교에 관한 지도·감독

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주요 국가의 경우, 행정기구는 주정부의 헌법 및 교육위원회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한하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행정은 오로지 주정부에 맡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도교육청의 기구설치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요 국가의 교육행정조직 형태를 볼 때, 우리나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재조정하여 기구설치 및 정원관리를 지방에 완전히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을 지방직화하여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서적

姜吉奉, 1997, 행정學原論, 서울: 育書堂.

金光雄·金信福·朴東緒, 1998, 比較行政論, 第二 改訂版, 서울: 博英社.

_____, 2000, 比較行政論,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金圭定, 1993, 新稿 行政學原論, 서울: 法文社.

_____, 1998, 新版 行政學原論, 서울: 法文社.

金甫炫, 金庸來, 1983, 地方行政의 理論과 實際, 서울: 法文社.

金鍾喆, 1981, 現代教育論Ⅲ-교육의 행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1982, 教育行政의 理論과 實際, 서울: 教育科學社.

朴東緒, 1986,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_____, 1997, 韓國行政論, 서울: 法文社.

박천오·임도빈·하태권·박경효·박중훈·김상목·서성원·김근세·김종호,
1999, 제2판 비교행정론, 서울: 法文社.

白完基, 1992, 全訂增補版 行政學, 서울: 博英社.

백종억, 1996,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서울: 교육과학사.

서정화, 2001, 인적자원개발과 교육개혁, 교육 및 인적자원 행정체제의 개편,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孫在植, 1971, 現代地方行政論, 서울: 陽友社.

시사 엘리트 영한사전, 2002, 서울: 시사영어사.

윤정일, 2000년 12월,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간의 기능 분담, 教育行政學研

- 究, 제18권 제4호, 통권 제41호, 서울: 韓國教育行政學會.
- 李圭煥, 1999, 한국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李正寬, 1999, 미국 지방정부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思想社會研究所.
- 鄭世煜, 1984, 國家와 地方自治團體間의 機能配分論, 韓國政治行政體系, 서울: 博英社.
- _____, 1998, 地方行政學, 서울: 法文社.
- 조석준, 1994, 한국조직행정론, 서울: 법문사.
- 崔昌浩, 鄭世煜 共著, 1983, 行政學, 서울: 法文社.
- 崔恒洵, 1999, 行政組織論, 서울: 東星出版社.
- 洪準賢·曹禎來, 1997, 主要諸國의 行政制度 動向調査: 美國의 聯邦政府組織, KIPA 研究報告 97-14-1, 서울: 韓國行政研究院.

2. 논문

- 金信福, 1985, 地方自治와 教育自治, 教育行政學研究, 제3권 제1호, 教育行政學研究會.
- 김병준, 1999, 고비용 저효율의 개편안, 중앙일보 1999년 3월 8일자 시론
- 金永植, 1983, 教育行政機能 및 組織의 再定立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년 5월 10일자 보도자료

3. 정부 및 연구기관문서

- 地方自治制實施研究委員會, 1985, 地方自治團體機能의 配分方式과 基準, 유인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년 9월, 美國 大都市의 지방자치, 연구자료집, 97-5, 제61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년 9월, 현지에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실제, 연구자료집, 97-6, 제62권.

II. 국외문헌

Almond, G. A. and Powell Jr., 1966,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and Brown.

Hazard, John N. 1960, *The Soviet System of Gover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sselbein, Frances., Beckhard, Richard., Goldsmith, Marshall. 1997, *The Organization of the Future*, Josey-Bass Inc., San Francisco, CA., 이재규 · 서재현 옮김, 1998, 「未來의 組織」,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Spring, Joel. 1985, *American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New York: Longman, Inc..

III. 인터넷 사이트 자료

1. 국내 인터넷 사이트

www.kfta.or.kr

www.moe.go.kr/

www.metro.pusan.kr/open_admin/index.jsp?left=introduce&main=symbol&code=AB0

www.nam.pusan.kr/webbbs/map/goUrlAll.asp

http://nambu.pen.go.kr/frameSet_04_01.html

<http://org.mogaha.go.kr:7003/jojik/>

www.pen.go.kr/neo/index_pedu05.html

2. 국외 인터넷 사이트

www.australia.or.kr/korean/html/government_system_kr.htm

www.bayside.vic.gov.au/index.html

www.bayside.vic.gov.au/servicesA_L/children/child_home.htm

http://canada.gc.ca/howgoc/canmin/index_e.html
www.canada.gc.ca/othergov/prov_e.html
www.cde.ca.gov/ana.htm
www.cde.ca.gov/board/
www.cde.ca.gov/board/vmgoal.html
www.cde.ca.gov/ccpdiv/
www.cde.ca.gov/cdeorg.html
www.cde.ca.gov/cilbranch/
www.cde.ca.gov/cyfsbranch/
www.cde.ca.gov/executive
www.cde.ca.gov/govaffairs/index.html#about
www.cde.ca.gov/labbranch/l.html
www.cde.ca.gov/labbranch/Audits.html
www.cde.ca.gov/news/
www.cde.ca.gov/ope/
www.cde.ca.gov/spbranch/
www.cde.ca.gov/spbranch/essdiv/dcdis_index.html
www.cde.ca.gov/statetests/
www.cio-bic.gc.ca/facts/index_e.html
www.city.kyoto.jp/koho/yokoso/soshiki/minami/index.html
www.city.kyoto.jp/koho/yokoso/soshiki/y_sosi.htm
www.city.kyoto.jp/kyoiku/index.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105041305011.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944041305011.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honbun/k1020947041305011.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itiran/r_taikei_08.html

www.city.kyoto.jp/somu/bunsyo/REISYS/noframe/itiran/r_taikei_24.html

www.co.la.ca.us/annualrpt0-01.pdf

www.co.la.ca.us/overview.htm

www.cold.ca.gov/Ca_State_Gov_Orgchart.pdf

www.communication.gc.ca/facts/educ_e.html

www.communication.gc.ca/facts/govt_e.html

www.deet.vic.gov.au/deet/about/minister.htm

www.deet.vic.gov.au/deet/media/pdfs/DEET_Enhancement.pdf

www.deet.vic.gov.au/deet/pdfs/deet00.pdf

www.deet.vic.gov.au/deet/pdfs/Deet01.pdf

www.deet.vic.gov.au/deet/pdfs/DEET_2000-01_Youth.pdf

www.deet.vic.gov.au/deet/pdfs/OrgCharts.pdf

www.dest.gov.au/annualreport/2000/html/chapter_2.htm#1_2

www.dest.gov.au/annualreport/2001/c2/2b.htm

www.dest.gov.au/directory/audit.htm

www.dest.gov.au/highered/structure.htm

www.dest.gov.au/iae/

www.dest.gov.au/iae/branches/aei.htm

www.dest.gov.au/itssg/default.htm

www.dest.gov.au/schools/structure/index.htm#Executive

www.dest.gov.au/ty/branches.htm

www.dfat.gov.au/facts/education.html

www.dfat.gov.au/facts/system_of_governmen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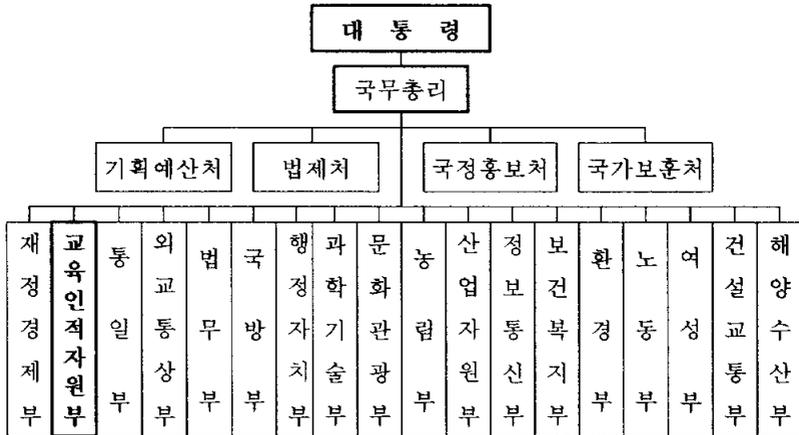
www.dms.dpc.vic.gov.au/
www.dpc.vic.gov.au/
www.dpc.vic.gov.au/servlet/rwp-ps?/dpc/dpc.nsf/SearchDocs/About+Victoria
www.dpnc.gov.au/findex.cfm
www.ed.gov/about/offices.jsp
www.ed.gov/NLE/USNEI/us/fedrole.html
www.ed.gov/NLE/USNEI/us/org_us.html
www.ed.gov/offices/OCFO/orgtxtnw.html
www.ed.gov/offices/OCIO/
www.ed.gov/offices/OESE/aboutus.html
www.ed.gov/offices/OIG/
www.ed.gov/offices/OSFAP/
www.ed.gov/offices/OVAE/aboutus.html
www.ed.gov/NLE/USNEI/us/org-us.html
www.ed.gov/gen_ed_org/emt.html
www.ed.gov/offices/OBEMLA/
www.ed.gov/offices/OCR/aboutocr.html
www.ed.gov/offices/OERI/mission.html
www.ed.gov/offices/OGC/org.html
www.ed.gov/offices/OM/
www.ed.gov/offices/OPE/News/Welcome/overview.html
www.ed.gov/offices/OSERS/
www.ed.gov/offices/OUS/about.html
www.ed.gov/offices/OUS/fedrole.html
www.ette.vic.gov.au/about/index.htm
www.ette.vic.gov.au/about/key.htm

www2.gov.ab.ca/home/ministries/index.cfm
www.gov.ab.ca/qp/ascii/Acts/WPD/S03P1.TXT
www.gov.edmonton.ab.ca/city_managers_office/pdf/city_org_chart.pdf
www.gov.edmonton.ab.ca/corp_services/financial_management/ar_2000.pdf
www.houko.com/00/01/S22/067A.HTM#s2
www.kyoto-be.ne.jp/kouhou/org.htm
www.lacity.org/CLK/cps/govtglnc/id29.htm
www.lacity.org/oars/LAcityOrgChart.htm
www.lacoe.edu/lacoeweb/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86/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100/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02/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06/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107/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08/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11/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15/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117/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118/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23/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124/index.cfm?showMore=yes
www.lacoe.edu/lacoeweb/orgs/373/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369/index.cfm
www.lacoe.edu/lacoeweb/orgs/479/index.cfm?showMore=yes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CROP.PDF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this.html
www.learning.gov.ab.ca/department/about.asp
www.learning.gov.ab.ca/department/orgchart/orgchart.pdf
www.learning.gov.ab.ca/department/orgchart/descriptors.asp#BasicLearning
www.learning.gov.ab.ca/ei/maps/pubedm.asp
www.mext.go.jp/b_menu/soshiki2/index.htm
www.mext.go.jp/b_menu/soshiki2/kikou.htm
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www.monbu.go.jp/aramashi/2000jpn/02/02-5.htm
www.opsc.dgs.ca.gov/default.asp?mp=../AboutOpsc/main.asp
<http://ordlink.com/codes/lacounty/index.htm>
www.ose.ca.gov
www.parl.gc.ca/36/refmat/library/forsey/provmun-e.htm
<http://personnelcommission.com/ABOUTPC.HTM>
www.pref.kyoto.jp/soshiki.html
www.sofweb.vic.edu.au/facility/facild/index.htm
www.sofweb.vic.edu.au/rsb/AboutUs/regBoard.htm
www.sofweb.vic.edu.au/rsb/index.htm
www.sofweb.vic.edu.au/standards/index.htm
www.sofweb.vic.edu.au/welfare/branch.htm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outusgov/gov.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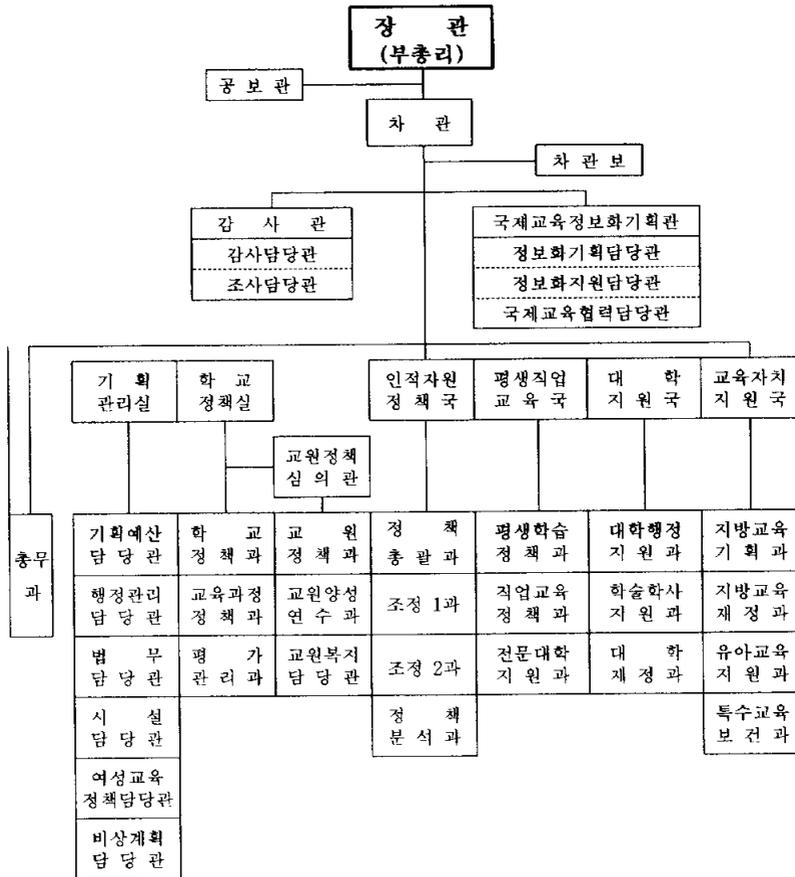
〈부 록〉

[부록 3-1]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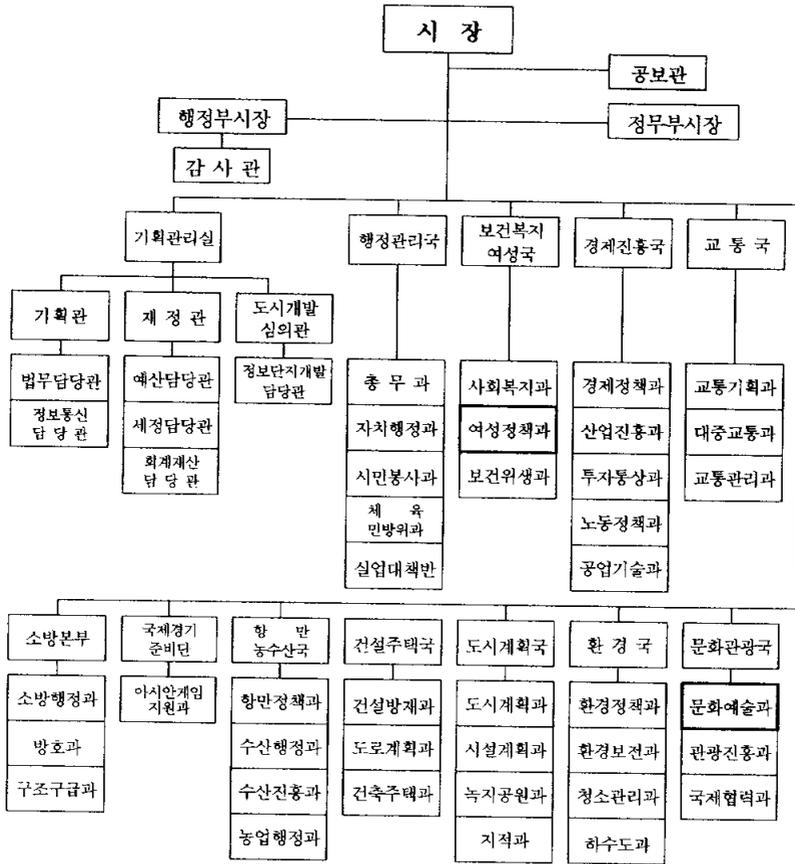
자료: 行政府: 中央行政機關, <http://org.mogaha.go.kr:7003/jojik/>

[부록 3-2] 교원인적자원부의 기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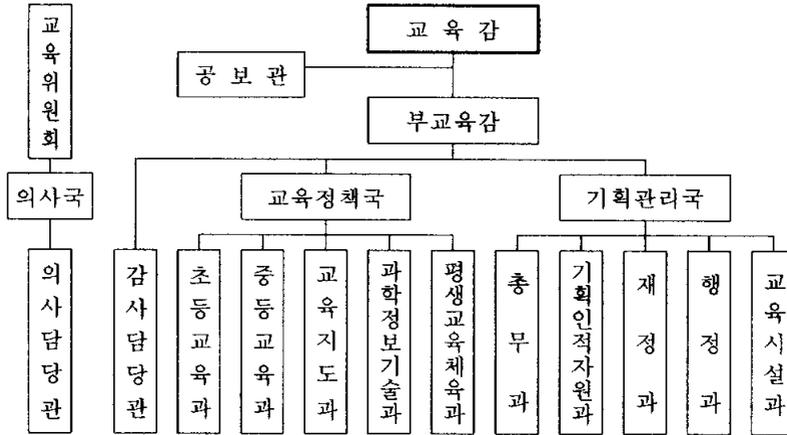
자료: 教育人的資源部, <http://org.mogaha.go.kr:7003/jojik/>; 教育인적자원부소개: 조직 구성, www.moe.go.kr/

[부록 3-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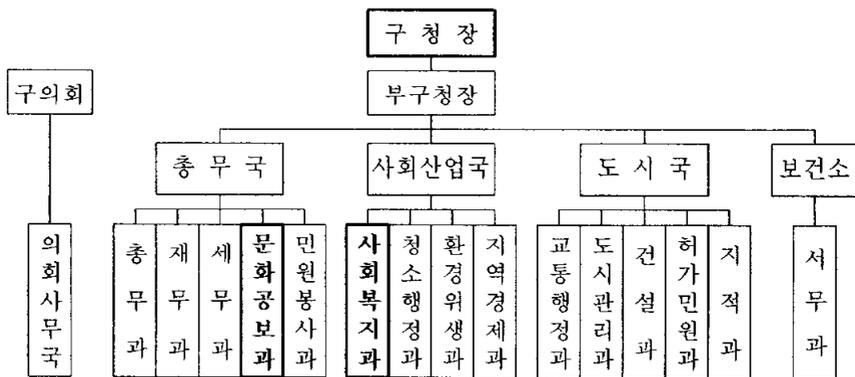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기구/인력현황, www.metro.pusan.kr/open_admin/index.jsp?left=introduce&main=symbol&code=AB0

[부록 3-4]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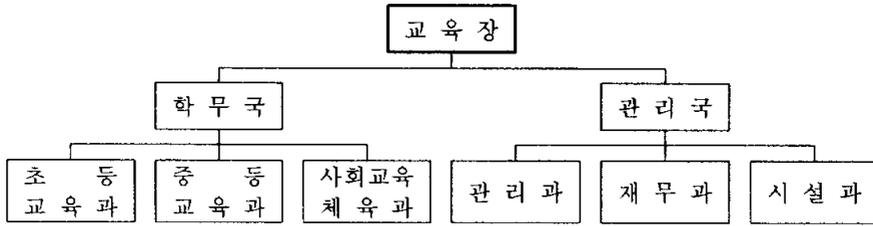
자료: 부산교육: 조직도 및 전화번호, www.pen.go.kr/neo/index_pedu05.html

[부록 3-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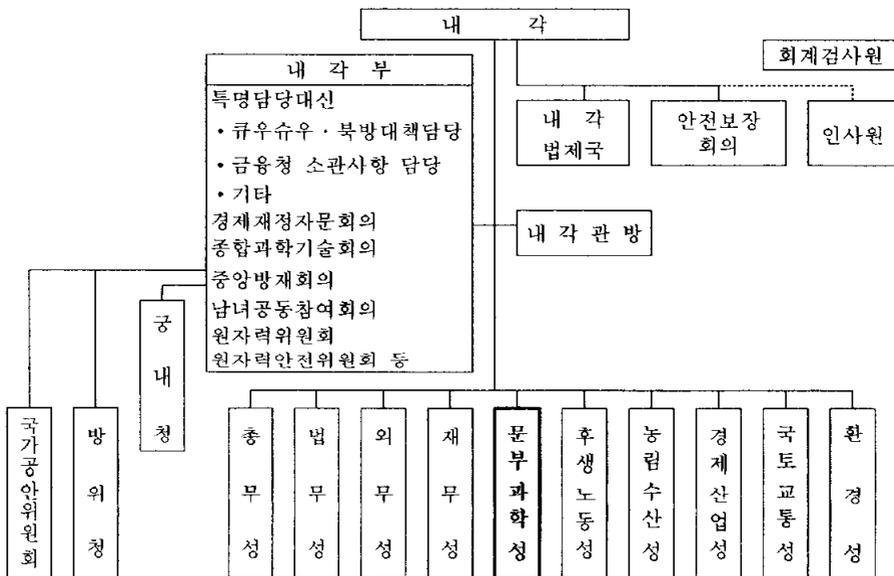
자료: 청사안내: 부서별 업무, www.nam.pusan.kr

[부록 3-6]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기구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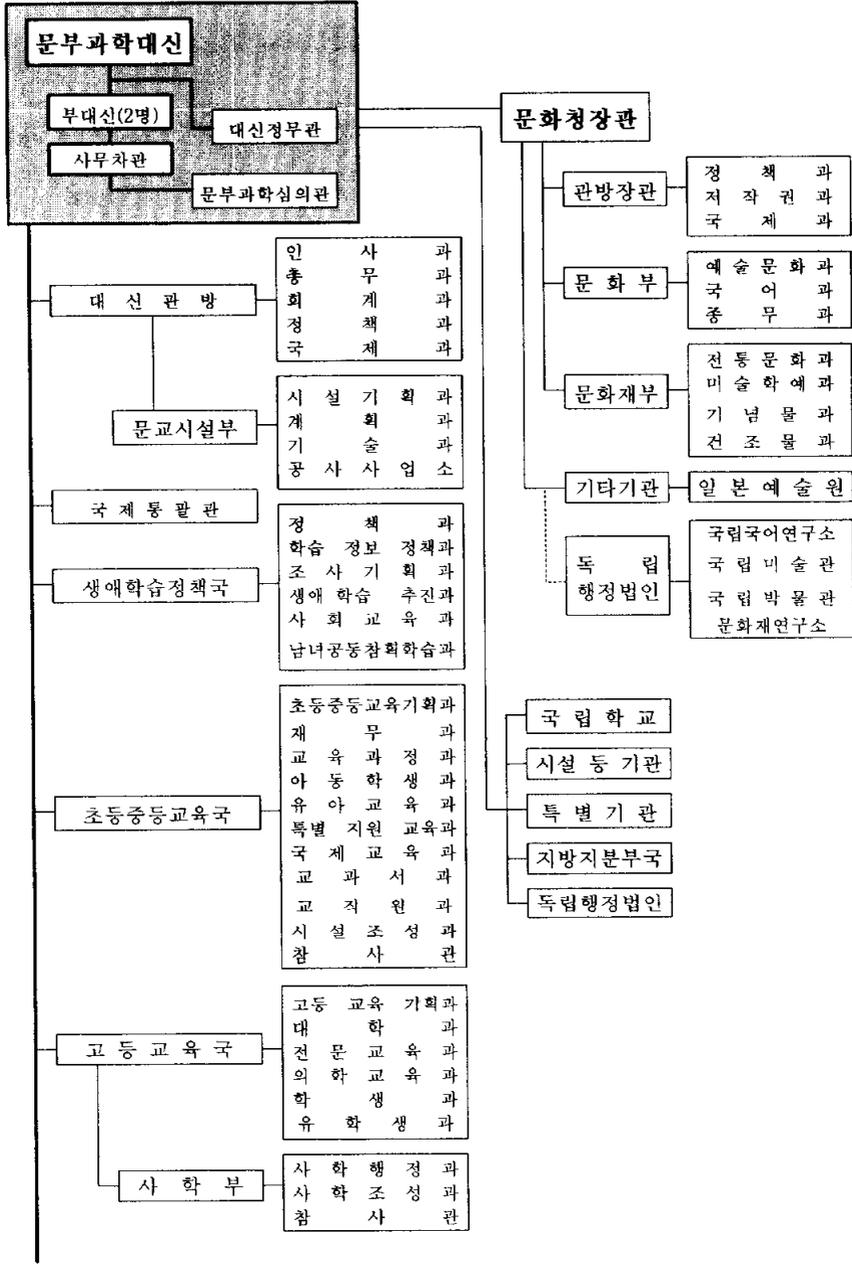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의 과홈페이지: 기구조직도,
http://nambu.pen.go.kr/frameSet_04_01.html

[부록 3-7] 일본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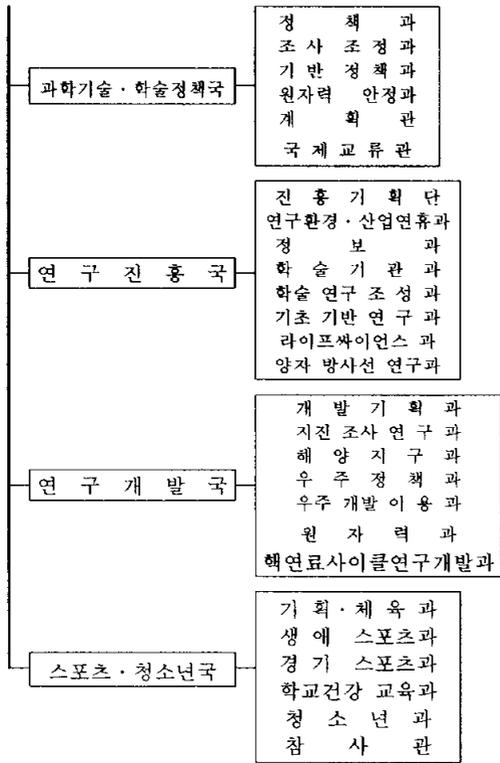


자료: 중앙행정조직 기구, www.mext.go.jp/b_menu/soshiki2/kikou.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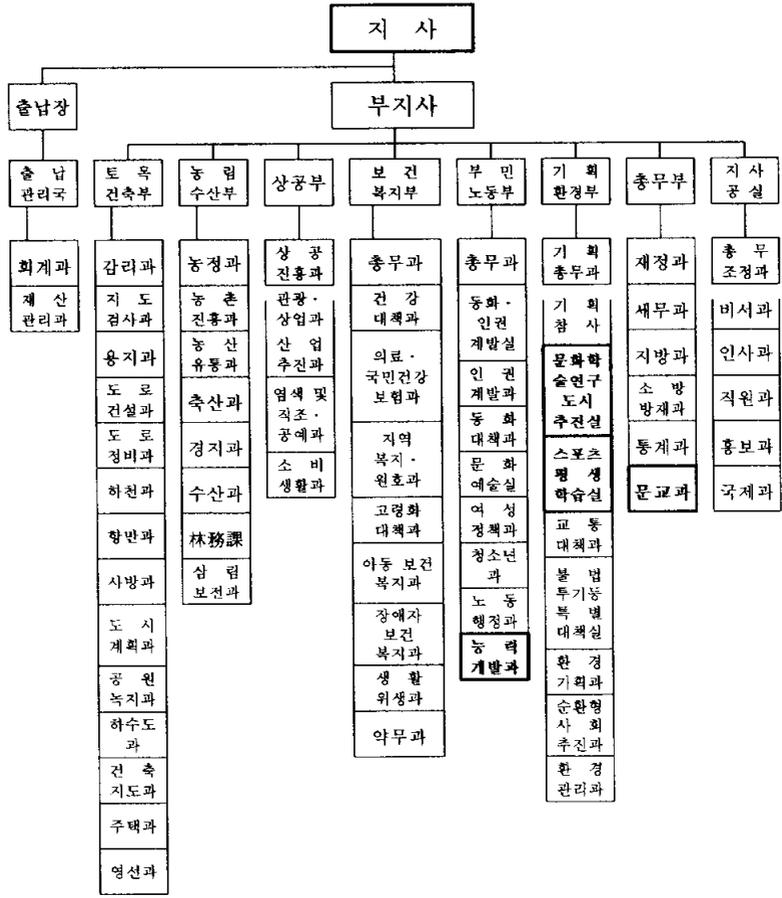
[부록 3-8] 일본 문부과학성의 기구조지도



자료: 文部科學省の組織, www.mext.go.jp/b_menu/soshiki2/index.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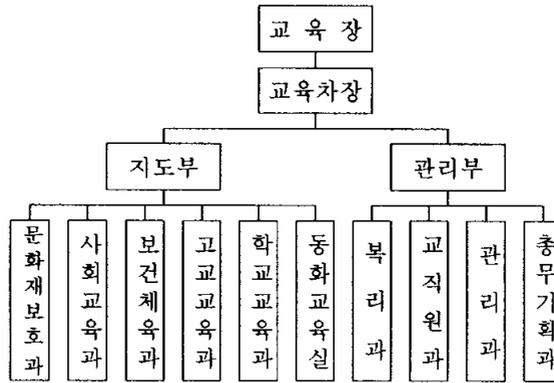


[부록 3-9] 교토부(京都府)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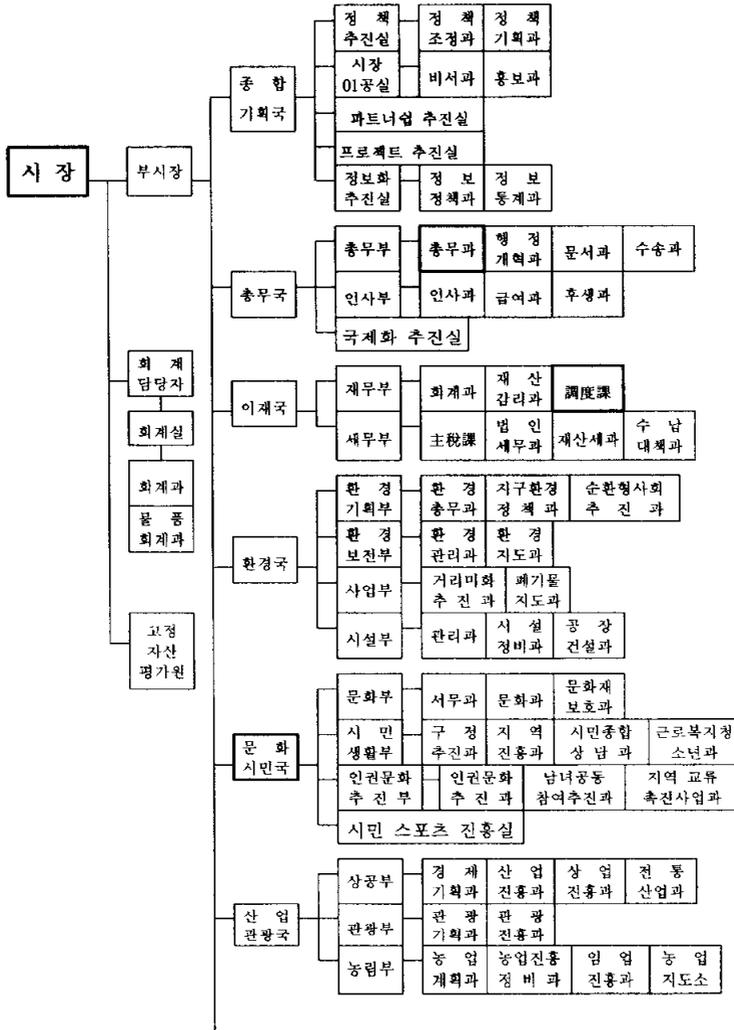
자료: 京都府知事部局等機構一覽表, www.pref.kyoto.jp/soshiki.html

[부록 3-10] 교오토부 교육청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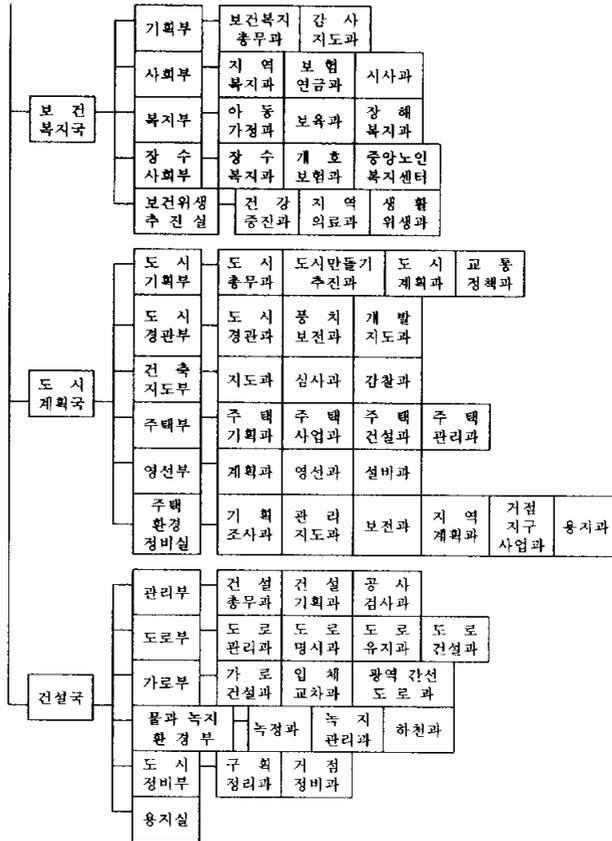


자료: 教育委員會の組織: 教育廳 (教育委員會の事務局),
www.kyoto-be.ne.jp/kouhou/org.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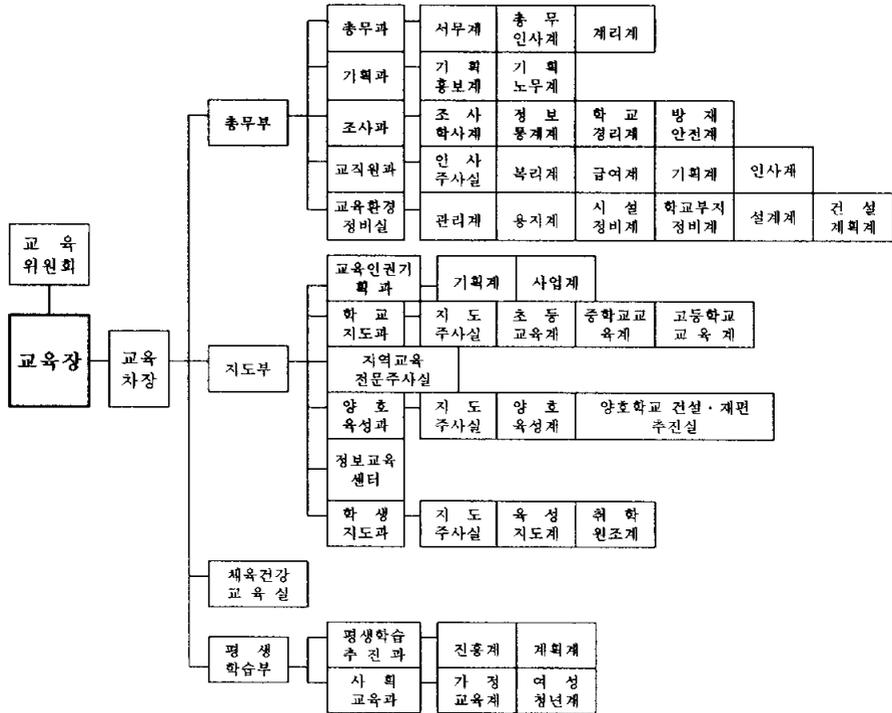
[부록 3-11] 교토시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京都市の組織圖,
www.city.kyoto.jp/koho/yokoso/soshiki/y_sosi.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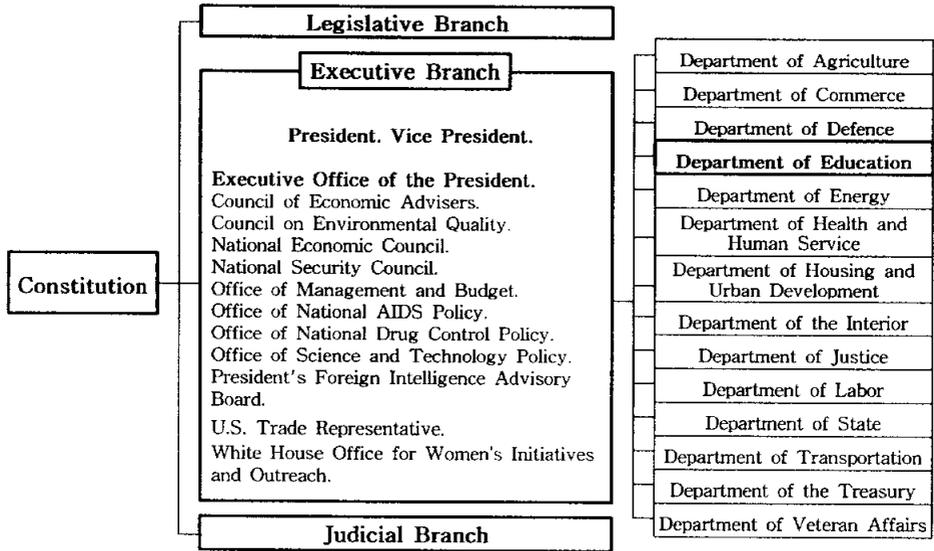


[부록 3-12] 교토시 교육위원회 사무국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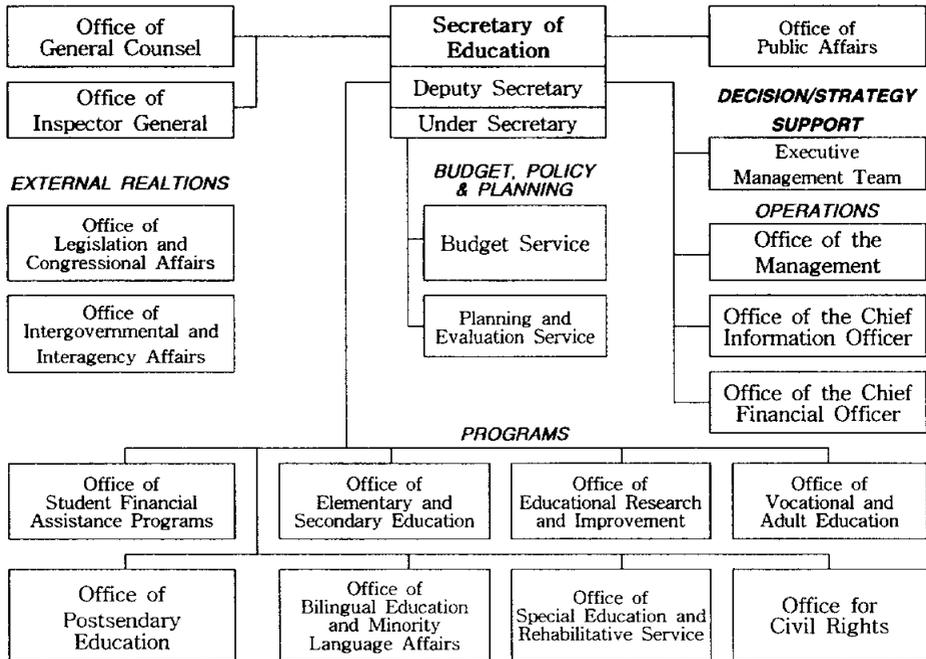
자료: 教育委員會事務局, www.city.kyoto.jp/kyoiku/index.html; 京都市教育委員會通則, www.city.kyoto.jp/somu/bunso/REISYS/noframe/itiran/r_taikei_24.html

[부록 3-13] 미국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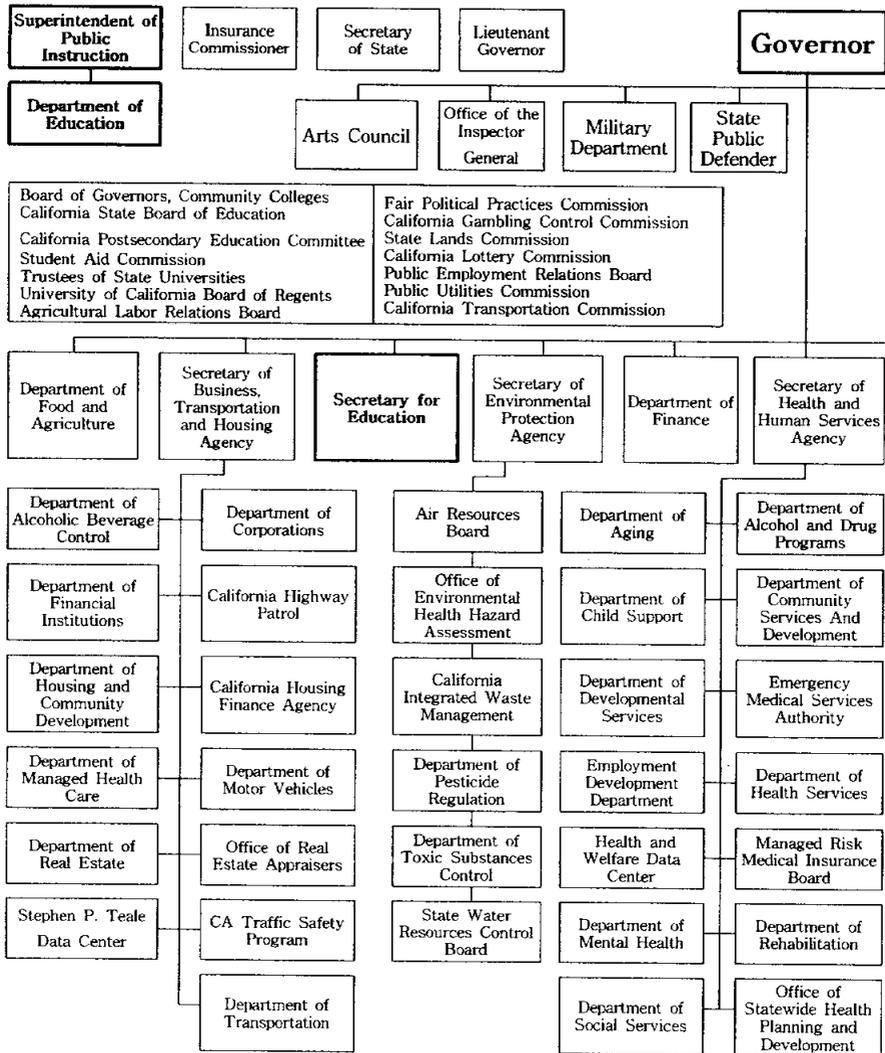
자료: Our American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ttp://usinfo.state.gov/products/pubs/outusgov/gov.htm>

[부록 3-14] 미국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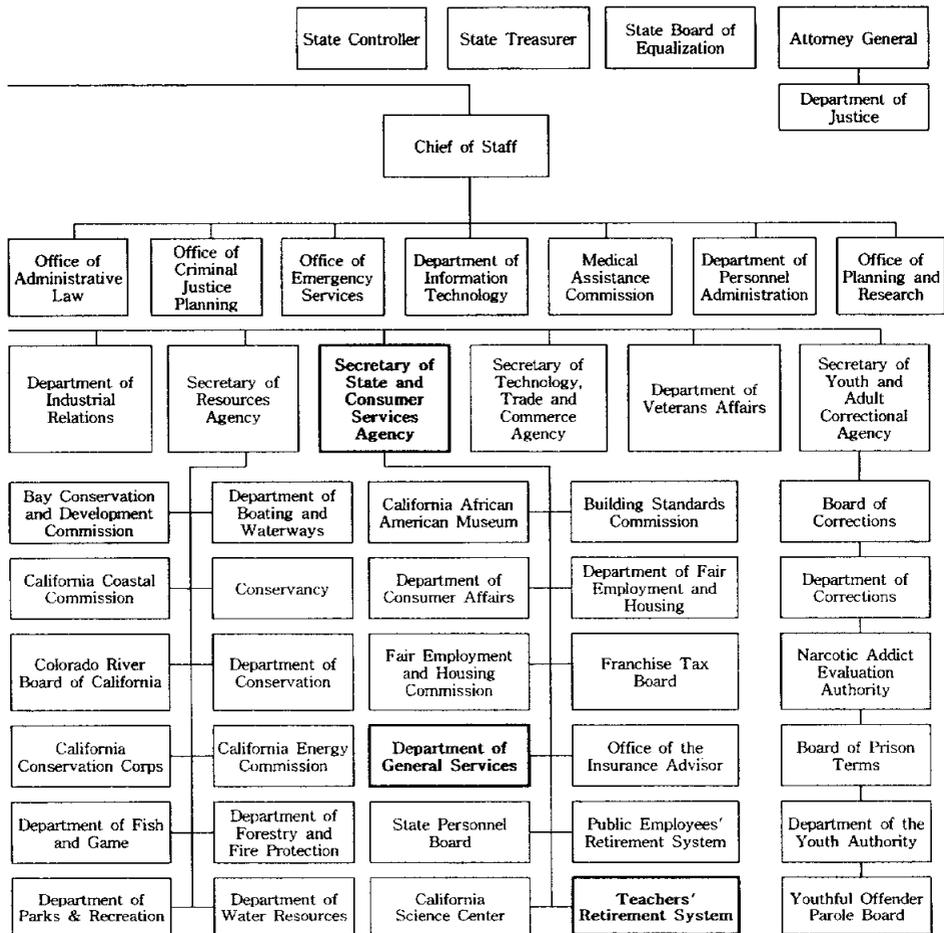


참고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ED): About ED, "Organization Structure", www.ed.gov/about/offices.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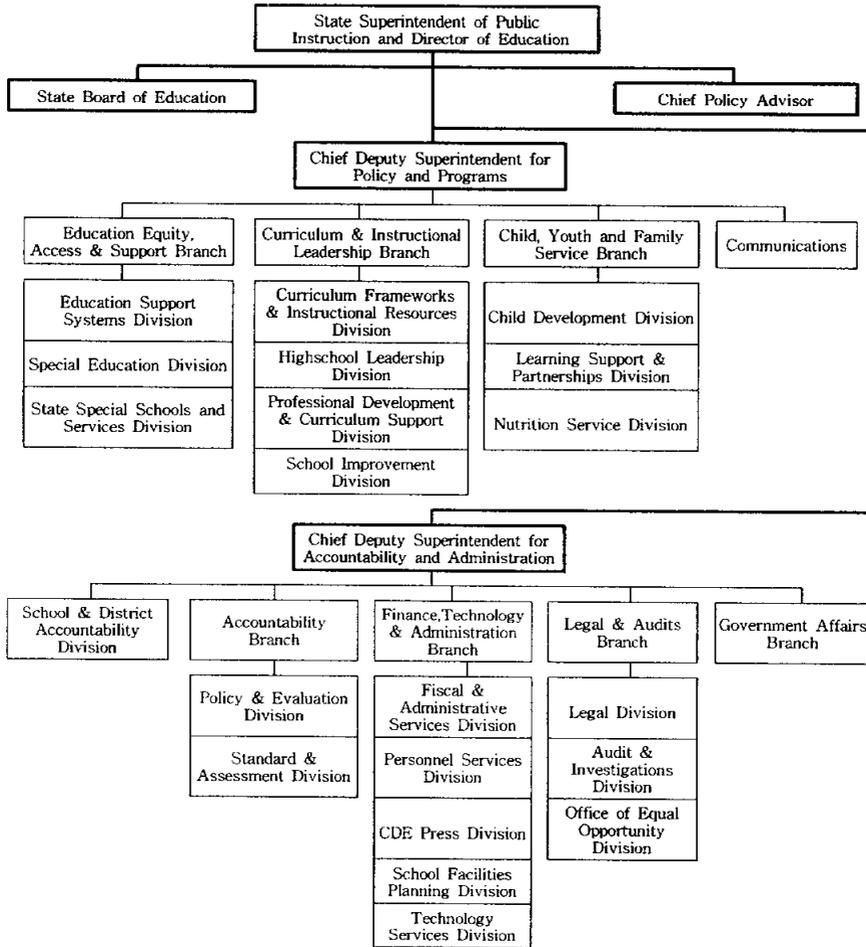
[부록 3-15] 캘리포니아주의 주 정부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Online Services: State Phone Directory-California Orgchart,
www.cold.ca.gov/Ca_State_Gov_Orgcha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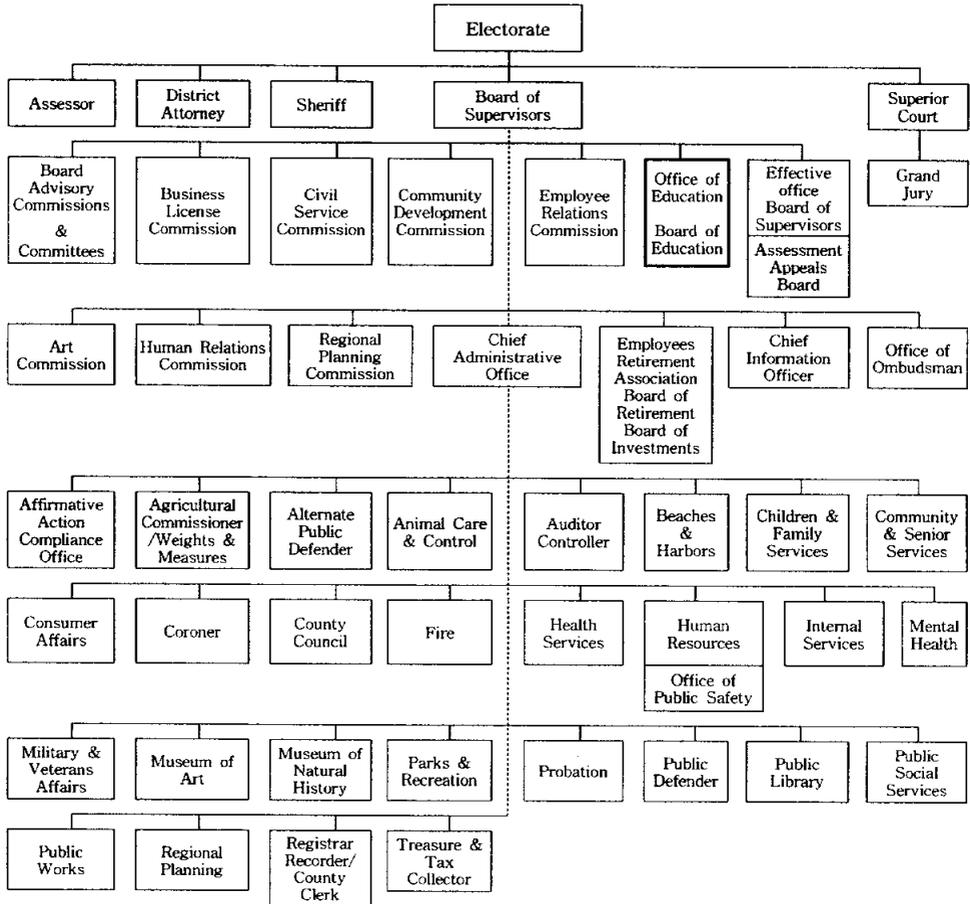


[부록 3-16]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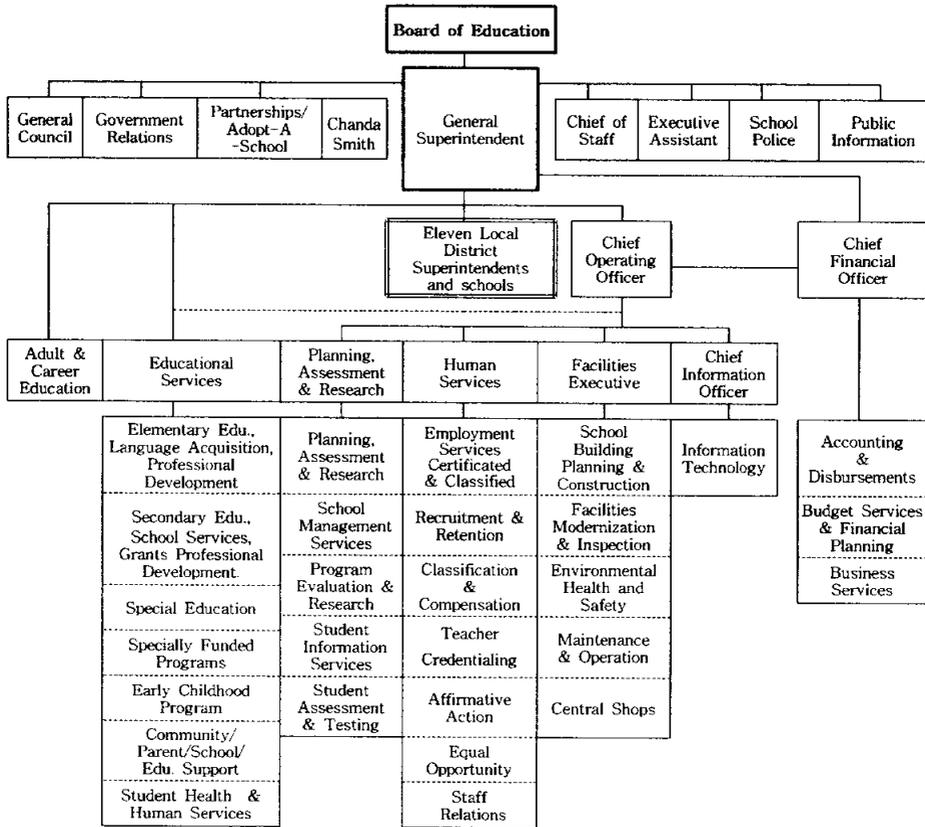
자료: Organization for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www.cde.ca.gov/cdeorg.html

[부록 3-1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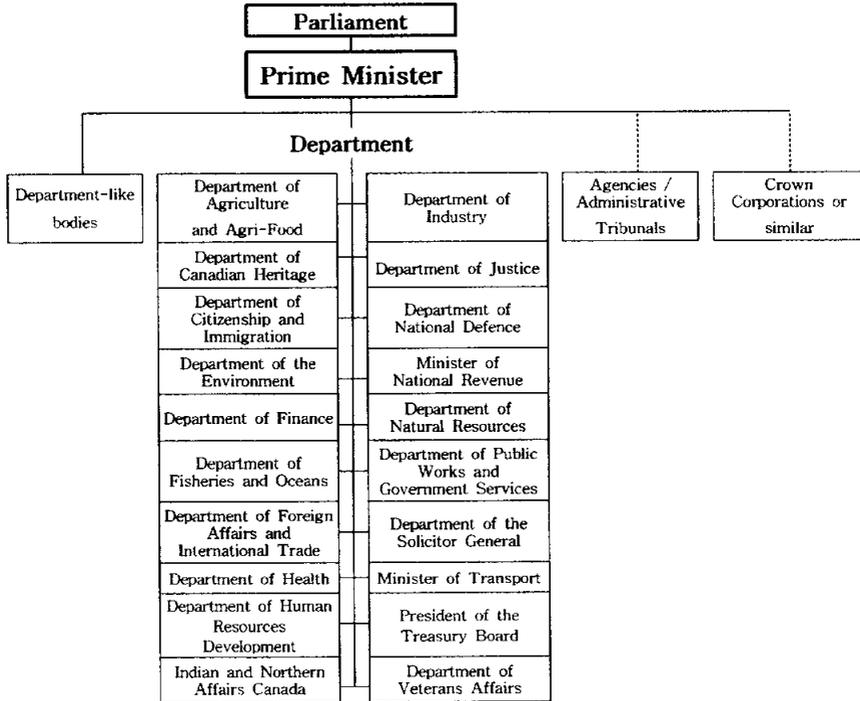
자료: Annual Report 2000-2001: The County of Los Angeles Annual Report 2000-2001.
<http://www.co.la.ca.us/annualrpt0-01.pdf>, p. 8

[부록 3-18]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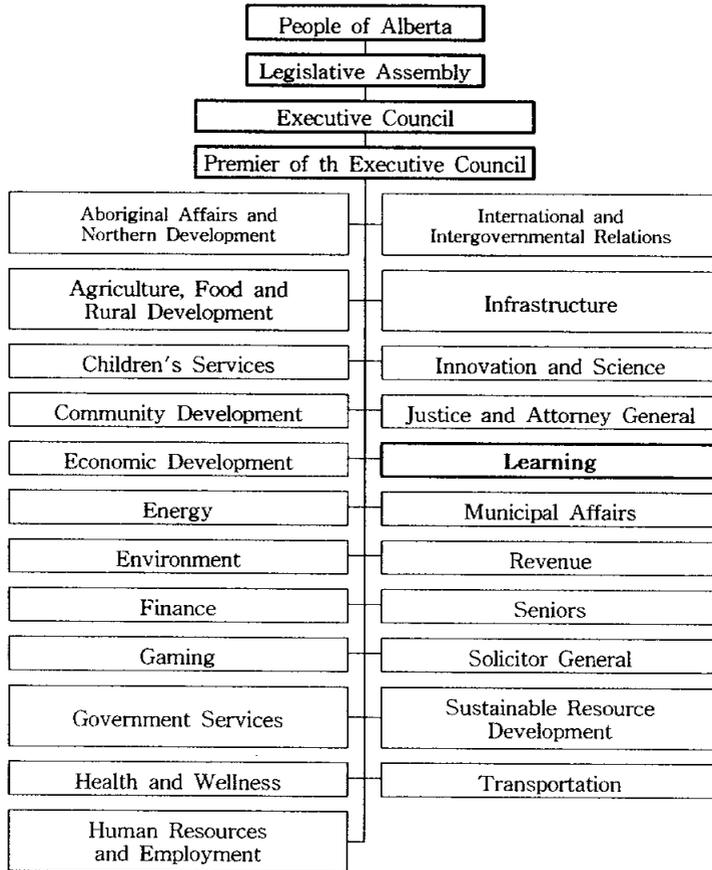
자료: District Reorganization Plan, Eleven Local Districts, One Mission: A Multiple District Plan for Transforming th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www.lausd.k12.ca.us/lausd/offices/Office_of_Communications/CROP.PDF, p. 27.

[부록 3-19] 캐나다 중앙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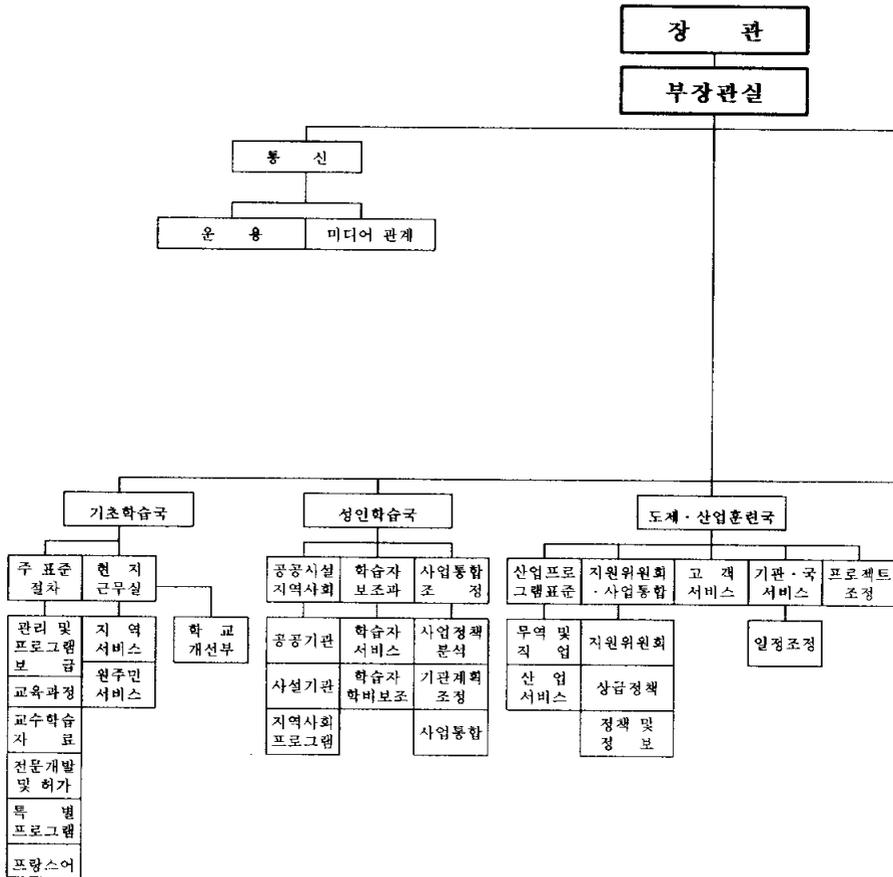
자료: About Government: Government at a Glance, by Portfolio-All Charts, http://canada.gc.ca/howgoc/canmin/index_e.html

[부록 3-20] 앨버타주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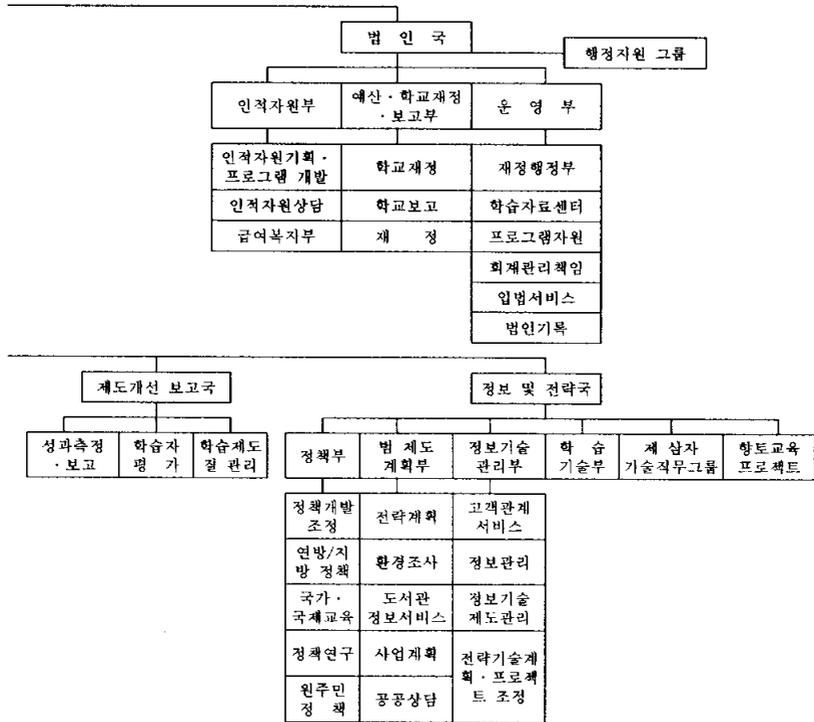


자료: Alberta Government Ministries,
www2.gov.ab.ca/home/ministries/index.cf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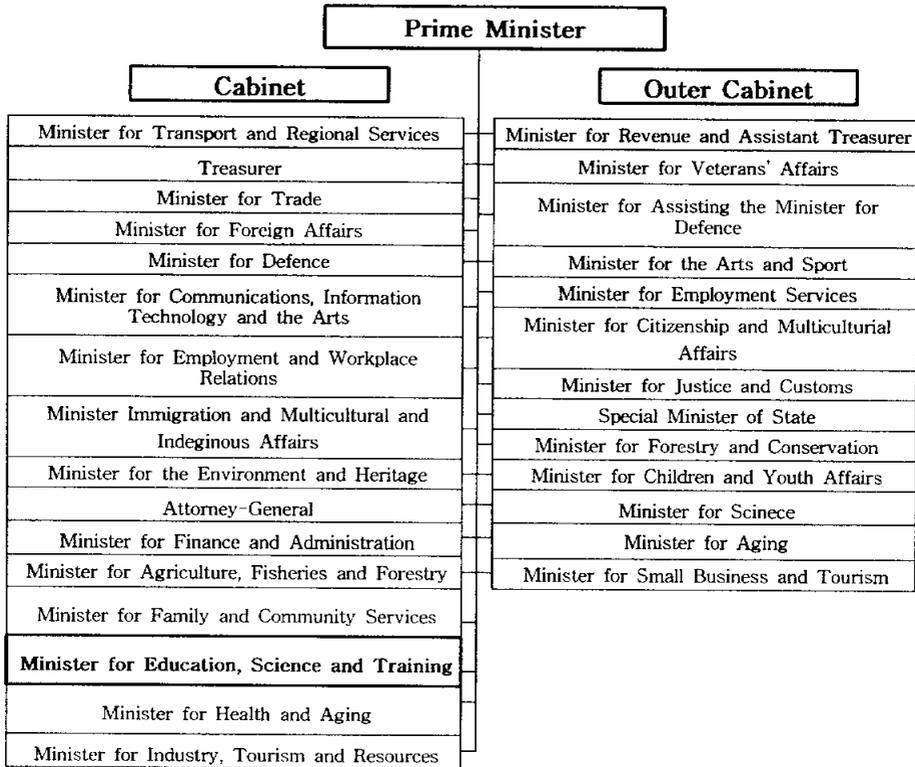
[부록 3-21] 앨버트주 학습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About Alberta Learning: Alberta Learning's organizational charts,
www.learning.gov.ab.ca/departments/orgchart/orgchar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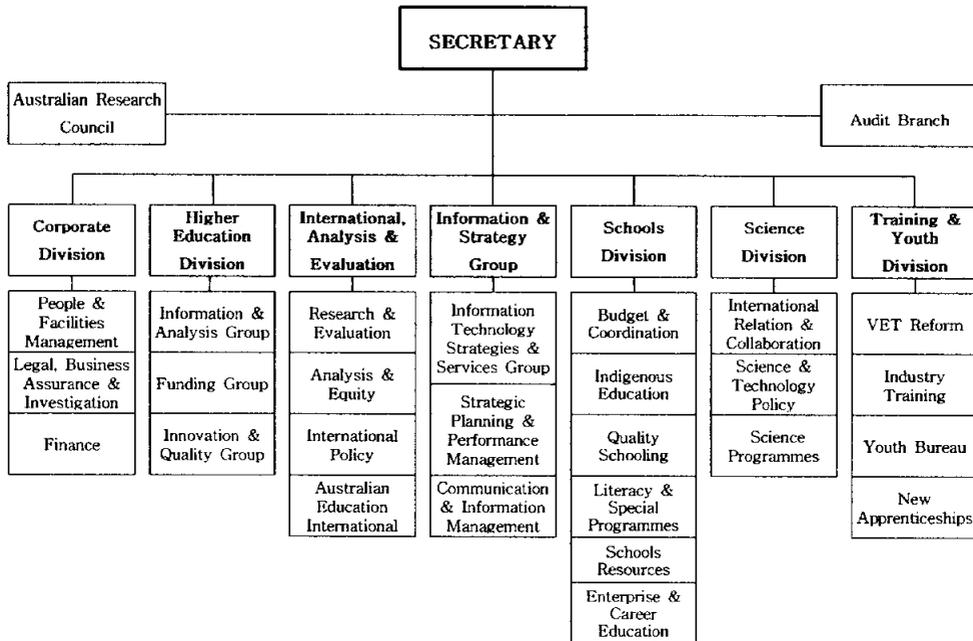


[부록 3-22] 호주 연방정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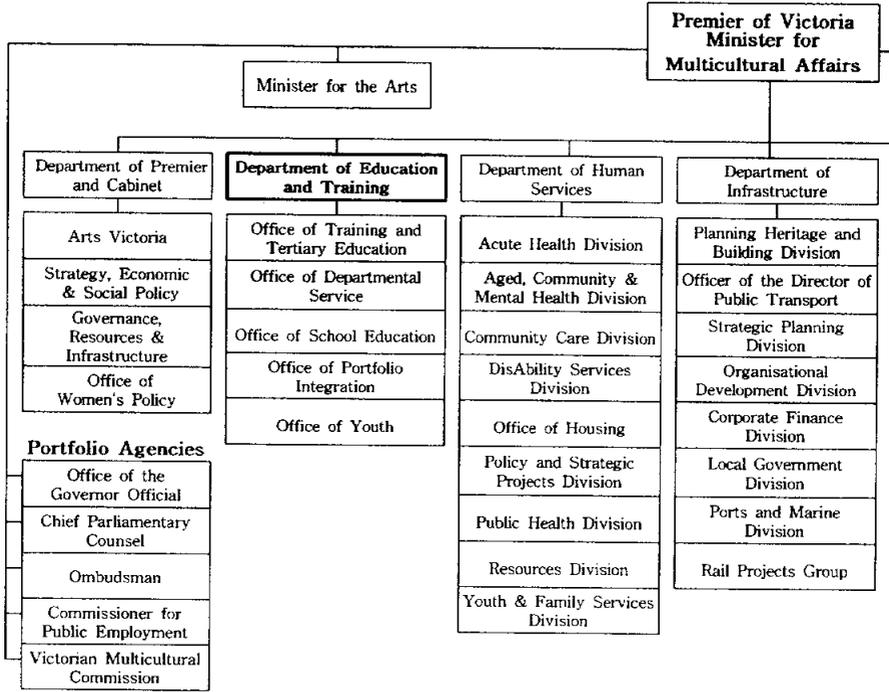
자료: 주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 주재국 개황-행정부, 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호주 연방정부 홈페이지: The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Functional Index-Ministry List, www.dpmc.gov.au/findex.cfm

[부록 3-23] 호주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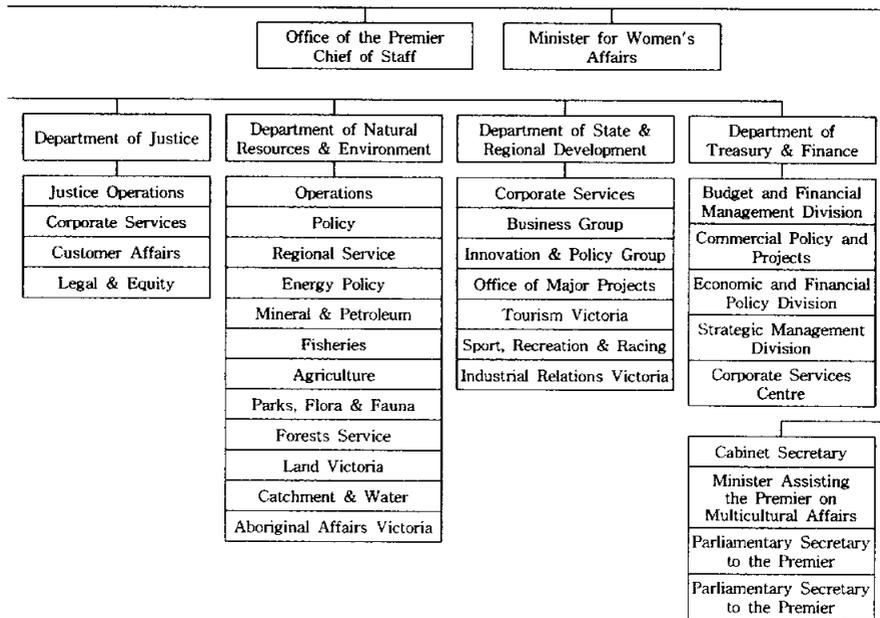


자료: About DEST, Annual Report 2000-01: Chapter 2 - The Department: Structure of the Department, www.dest.gov.au/annualreport/2001/c2/2b.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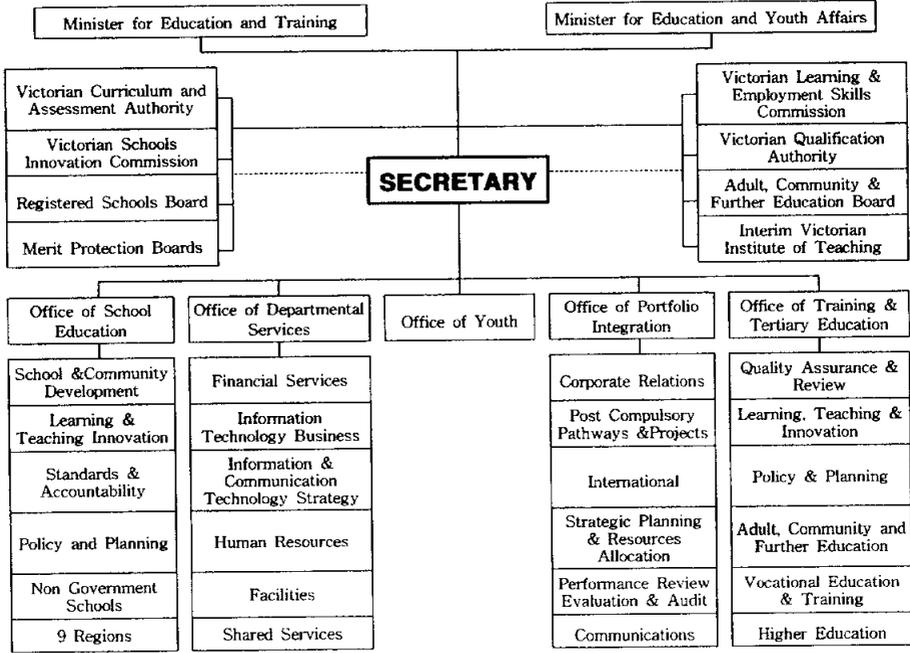
[부록 3-24] 빅토리아주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Departments, www.vic.gov.au/index.cfm; Department of Premier & Cabinet: Organizational Chart, www.dpc.vic.gov.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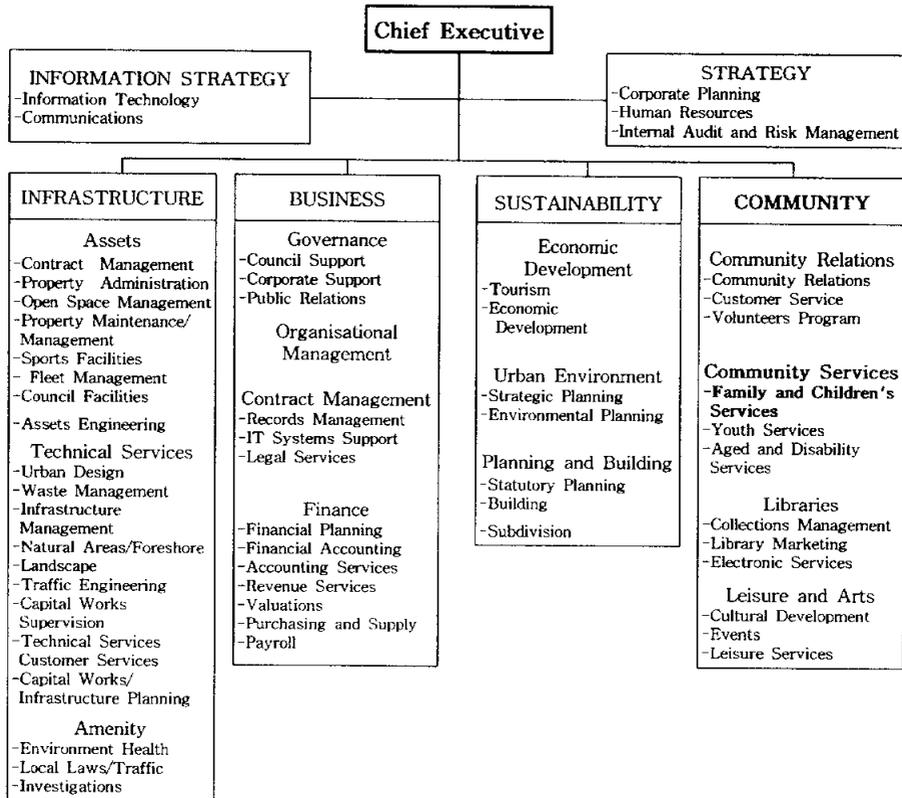


[부록 3-25] 빅토리아주 교육훈련부의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Training - About DE&T, 2001.4.,
www.deet.vic.gov.au/deet/pdfs/OrgCharts.pdf

[부록 3-26] 빅토리아주 베이사이드시의 행정기구 조직도



자료: Your Council: Organisation Chart, www.bayside.vic.gov.au/index.html